

동물보호관 대상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 ————— ○
**동물보호관 대상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 ————— ○

본 매뉴얼은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 보호관이 동물학대 신고 등에 따른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법령 내용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이후 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목 차

I 동물학대의 이해

1. 동물학대 및 동물학대범죄의 정의	8
① 동물의 정의	8
② 소유자등의 정의와 의무	8
③ 동물학대범죄의 정의	10
④ 동물학대범죄의 특징	10
2. 동물학대의 유형	12
① 방치	12
② 의도적인 물리적 학대와 고문	13
③ 조직화된 동물학대(동물싸움)	13
④ 성적 학대	14
⑤ 정서적 학대	14
⑥ 기타	14
3. 동물학대의 징후	15
4. 신고의무자	16
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용어	17

II 동물학대범죄 유형별 적용법률 및 판례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0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
②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22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3
④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24
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24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 주는 행위 등	27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7
②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28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	29
④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29
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31
3.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33
4.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34
5. 기타	35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35
②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2호	36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36
④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4호	37

III 동물학대사건의 처리

1. 동물학대 대응주체의 권한과 역할	40
① 동물보호관의 권한과 역할	40
② 명예동물보호관의 권한과 역할	41
③ 경찰의 권한과 역할	42
2. 동물학대사건 대응체계에 따른 업무흐름도	43
3. 단계별 처리절차	44
① 신고접수	44
② 동물학대범죄 여부 및 긴급성 판단	45
③ 현장출동	47
④ 동물학대조사(출입·검사)	48
⑤ 피학대 동물의 응급처치 및 이송	56
⑥ 격리 및 보호조치	60
⑦ 시정명령	63
⑧ 격리조치 동물의 반환 및 소유권 취득	64
⑨ 동물학대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66
⑩ 시정명령 및 사육계획 이행 여부 점검	70

I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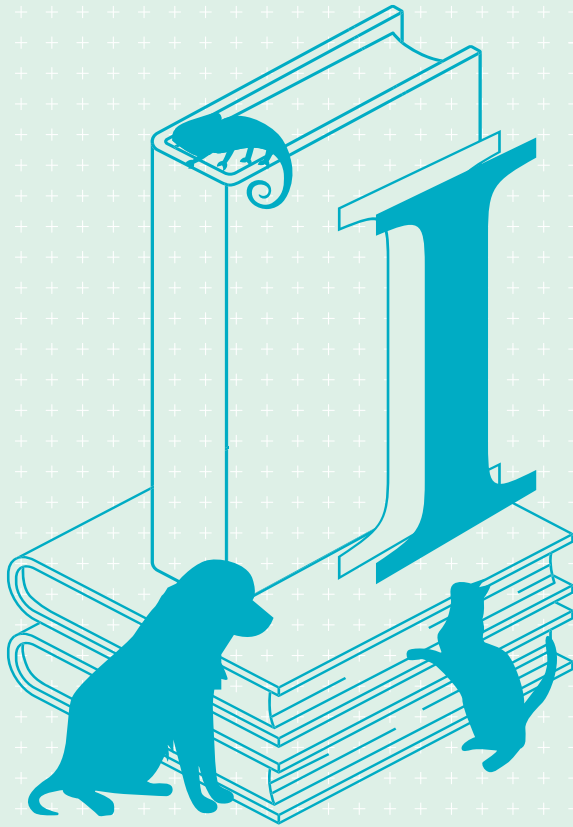
1. 동물학대사건 대응 단계별 점검표	74
2. 관련서식	77
3. 참고자료	100

표 목차

[표 Ⅰ-1] 애니멀 호딩의 분류	13
[표 Ⅰ-2] 동물학대의 징후	15
[표 Ⅰ-3]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용어	17
[표 Ⅲ-1] 동물학대 대응 주체별 역할	42
[표 Ⅲ-2] 경찰 출동 요청 및 단독 출동 예시	47
[표 Ⅲ-3] 동물 관련 불법행위 및 관련 법령	49
[표 Ⅲ-4] 동물학대 현장 출동 시 물품 및 장비 점검 목록	50
[표 Ⅲ-5] 등록대상 동물과 과태료 부과 기준	52
[표 Ⅲ-6] 상해유형별 동물학대 징후 및 조사방법	53
[표 Ⅲ-7] 우발적 부상과 비우발적 부상 비교	54
[표 Ⅲ-8] 학대발생장소 조사 점검표	55
[표 Ⅲ-9] 업무수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56
[표 Ⅲ-10] 보호조치와 격리조치의 비교	60
[표 Ⅲ-11] 사육계획 이행 여부 점검 내용	70
[표 Ⅳ-1] 동물학대사건 대응 단계별 점검표	74

그림 목차

[그림 Ⅲ-1] 동물학대 사건 업무 흐름도	43
-------------------------	----



동물학대의 이해

1. 동물학대 및 동물학대범죄의 정의	8
① 동물의 정의	8
② 소유자등의 정의와 의무	8
③ 동물학대범죄의 정의	10
④ 동물학대범죄의 특징	10

2. 동물학대의 유형	12	3. 동물학대의 징후	15
① 방치	12	4. 신고의무자	16
② 의도적인 물리적 학대와 고문	13	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용어	17
③ 조직화된 동물학대(동물싸움)	13		
④ 성적 학대	14		
⑤ 정서적 학대	14		
⑥ 기타	14		

I 동물학대의 이해



1 동물학대 및 동물학대범죄의 정의

1 동물의 정의

-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와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의미. 다만 시행령에 따라 식용목적의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제외(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의 경우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가 발생 하더라도 처벌 불가

사례 - 산천어축제 유흥목적 동물 이용 사건

2020년 11개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천어 살리기 운동 본부'는 산천어축제에서 유흥·오락의 목적으로 산천어들이 동물학대를 받고 있다며, 주최 측을 고발. 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은 행사장에서 산천어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식용 목적의 어류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점, 산천어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되는 점,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식용 어류를 활용한 행사를 연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춘천지방검찰청 2020형제650호)

2 소유자등의 정의와 의무

- '소유자등'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령 소유자는 아니나 동물위탁관리업자가 동물을 위탁받은 경우 일시적이기는 하나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있어 소유자등의 의무와 책임 발생
-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또한 시행규칙으로 정한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준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2. 개별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의 조명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 1)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할 것
 - 2)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할 것
- 나.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다. 깔짚을 이용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 라.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驅蟲)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한다.
- 마. 돼지의 송곳니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3

동물학대범죄의 정의

-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광의적 개념(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
- 그러나 동물학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거나 처벌받지는 아니하므로 동물학대의 정의와 동물학대범죄 구분 필요
- 동물학대범죄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물학대행위로 인하여 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협의의 개념. 본 매뉴얼에서의 동물학대는 협의의 개념인 동물학대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되지 않는 동물학대는 별도 표기
- 과실행위 불처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행위 태양과 그 결과가 동물학대에 부합하거나 유사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하지 않음¹⁾

사례 - 차량에 묶인 개를 끌고 갔으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

2022년 7월 A사에서 한 SUV 차량 트렁크에 개의 목을 걸고 주행해 죽음에 이른 사건 발생.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피의자가 고의로 차량에 개를 매달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경기양주경찰서 2022-003341)

다만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고의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

사례 - 수감 등을 이유로 반려견의 방치치사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미필적 고의 인정

A는 2017년 1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닥스훈트 1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사건1), 2018년 5월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닥스훈트 1마리와 종류불상 2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여(사건2)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됨. 피고인은 사건1에 대하여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후배들에게 시켜 개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게 하였고, 사건2에 대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왜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1에 대하여는 사건 발생 전 해당 건물 3층 방실을 임차하여 개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였음에도 피해견을 데리고 가지 않고 설령 그러한 부탁 등을 하였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개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건2에 대하여는 사체가 발견되기 약 보름 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들의 소유주이자 관리자로서 이미 상당기간의 폐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고 수사기관 또는 구금시설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8선고 2019고정291)

1) 형법 제14조(과실)에서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

2) Anton van Wijk 외, 2017, Animal abuse : Offender and offence characteristics. A descriptive study. p.6

4

동물학대의 특징

■ 사람과의 접점 정도(수준)에 비례

동물학대범죄는 반려동물, 길고양이와 같이 사람과의 접점이 넓은 동물들이 주요 대상. 네덜란드에서 동물학대 범죄자와 특징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학대받는 동물의 79%는 반려동물이었으며 야생 동물은 13%정도에 불과²⁾

■ 보호책임자에 의한 학대 가능성

상기 연구조사에서 피학대 동물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해당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남³⁾. 동물학대범죄는 동물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는 이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 피해당사자의 진술 능력 부재

동물학대범죄는 외부로 드러나기도 어렵지만 노출된다 하더라도 피해당사자인 동물의 진술능력 부재로 혐의 입증이 어려움. 의사표현 및 진술능력이 제한되는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하거나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한지 등 징후를 체크해 아동학대를 의심해보고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안내⁴⁾. 동물의 경우에도 언어소통이 불가해 피해여부에 대한 진술능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해 흔적, 형태, 행동 등의 징후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다른 사건에 비해 현장조사 시 동물학대(의심)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채증 등이 더욱 중요⁵⁾

■ 피학대 동물의 보호 문제

동물학대사건에서는 동물이 그 자체로 증거물의 성격이 있어 해당 동물을 처분함으로써 사건 은폐 시도 가능성 존재

사례 - 동물학대 신고 후 해당 동물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음

2019년 5월 B시에서 봉고차 뒤에 개를 묶어 놓고 달린 사건 발생.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별다른 격리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지자체 현장 방문 시 견주는 “개가 죽어서 산에 묻었다”고 주장.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대자의 수중에 남겨지는 경우 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거나 소유자로부터 학대(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3) Anton van Wijk 외, 2017, Animal abuse : Offender and offence characteristics. A descriptive study. p.6

4) 아동권리보장원, 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5) 미국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경우 불안 증상 표출 △꼬리나 생식기 부위 접촉시 과도한 예민 증세 또는 난폭한 태도 등을 동물학대 징후로 제시

2

동물학대의 유형⁶⁾

※ 본 절에서 다루는 동물학대의 유형은 개념상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로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범죄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1

방치

1) 단순방치

-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학대 유형으로 (1) 적절한 먹이, 물, 사육공간,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2) 다치거나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
- 단순방치의 경우 가해자나 주변인들이 ‘동물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돌봄 및 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자등의 건강상태, 직업적 특성, 경제적 여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2)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방치

- 단순방치의 경우 동물에 대한 학대의도보다 소유자등의 가치관, 인식, 제반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다면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의 방치는 의도적이거나 동물에게 초래되는 고통, 질병, 상해, 죽음 등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발생
- 동물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방치되거나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상해 등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

3) 애니멀 호딩

- 자신의 사육·관리 능력을 넘어 동물을 키우는 저장 강박의 특수한 징후 중 하나로 단순히 여러 마리의 동물을 키우는 것과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1) 최소한의 영양, 위생 및 수의학적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2) 동물의 상태 및 환경 악화(동물의 질병, 굶주림, 죽음, 심각한 과밀, 극도로 비 위생적인 상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3)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함⁷⁾
- 애니멀 호딩의 경우 다른 동물학대와 다르게 피해동물 뿐 아니라 가해자와 가족, 주변 이웃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구조 및 보호를 요하는 동물의 수가 많아 다른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이 요구됨
- 애니멀 호딩의 분류⁸⁾

6)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범죄 관련 내용과 유형은 제2장 동물학대범죄 유형별 적용 법률 및 판례 참조.

7) Amanda I. Reinisch, 2008, 'Understanding the human aspects of animal hoarding', The Canadian Veterinary Journal

8) Randy O. Frost 외, 2015, The Hoarding of Animals: An Update(<https://www.psychiatrictimes.com/view/hoarding-animals-update>) (검색일 : 2023. 1. 30)

[표 1-1] 애니멀 호딩의 분류

유형	설명	유입 경로	특징
수동형	-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동물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유형(예 : 가족의 사망, 실직, 질병 등) - 초기에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만 개체수 증가 등으로 결국 사육한계를 넘어서며 환경 악화	주로 자체 번식 (수동적)	문제에대해 어느정도 인식, 다른 유형보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데 저항이 적은 편
구조형	- 안락사 등으로부터 동물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 단체를 가장한 개인 등이 존재 - 스스로 동물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다고 믿으며, 동물들의 사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지속적인 동물 구조, 자체 번식	외부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노력
착취형	-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을 데려오는 사회병리적 특성을 가진 개인 포함 - 동물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으며, 인간과 동물에 대한 공감 부족 - 자신의 동물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믿으며, 외부의 우려에 강하게 거부	필요에 의한 습득	모든 문제를 부인, 동물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 성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해결은 어려움

2

의도적인 물리적 학대와 고문

- 의도적인 상해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분노 표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등이 동기. 여기에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같이 신체를 이용한 폭행과 도구를 이용해 충격을 가하거나, 찌르거나 베는 행위, 무기를 발사하는 행위, 약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중독시키거나 혹은 위대한 음식을 먹이는 행위 (예 : 사료 등에 부동액 등을 섞어 길고양이에게 먹이는 행위), 신체에 불을 붙이거나 뜨거운 물 등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행위, 전기를 이용해 감전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

3

조직화된 동물 학대(동물싸움)

- 인간의 오락, 도박 또는 스포츠를 목적으로 둘 이상의 동물이 싸우도록 하는 학대. 동물들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스포츠를 도박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발견이 어렵고, 다른 범죄와 연루 가능성이 높음
- 시합과정에서 동물의 상해가 발생하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훈련과정에서도 동물학대 행위 발생 (예: 투견, 닭싸움)
-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와 그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4

성적 학대

- 애무나 자위와 같이 성적 목적으로 동물의 항문 또는 생식기에 자신의 신체나 물건을 이용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5

정서적 학대

- 동물에게 감정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하는 의도적인 행동 또는 무반응(행동을 취하지 않음)
(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 위협적 폭력과 혼합된 예측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양상의 학대)

6

기타

- SNS 등에서의 모임을 통한 동물학대, 동물학대 콘텐츠 유통 등
-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인한 동물학대(예: 고양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포획 및 채취(예: 곰 웅담 채취, 코끼리 상아, 악어 가죽 등)



3

동물학대의 징후

[표 1-2] 동물학대의 징후

학대유형		학대 정황 및 징후
신체적 학대	죽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체에 나타난 상해 흔적 • 독극물 섞인 토사물 등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된 부상 : 여러 군데의 부상, 발생(회복)시기 다른 복수의 부상 및 뼈의 다중 골절 발견 •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 무기력, 둔감 • 갑작스러운 지능 저하 및 건강 악화 • 정서적/지능 발달 부족 •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주인과 함께 있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소·대변을 지리는 등 극도의 불안 증상 • 주인 부재시 편안한 표정과 행동 표현, 반면 주인이 있을 경우 불안 표출 • 순하던 성격이 난폭해짐 • 극도의 식탐, 배설 자제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문, 직장 또는 외음부, 질 부위 외상성 손상 •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졌을 때의 이상행동 징후(공격성 등) • 탈모, 직장이나 질 등 회음부 주변 찰과상이나 찢어진 상처 • 복막염(복부 안의 염증) • 항문, 유두 또는 생식기 손상 • 재발성 질염, 직장염 또는 비뇨기 감염 • X-ray 상 자궁, 질 내부의 가스 음영 • 배뇨 생식기관 내 이물질
방임 /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이와 신선한 식수 부족 • 과도한 밀집 상태 • 비위생적인 사육공간(예 : 배설물 및 오염물질의 방치 등) • 날씨와 계절에 적합한 피신 공간(차양 또는 보온이 되는 공간)의 부족 • 뜰장 형태의 사육공간 제공으로 사육장을 위아래로 쌓을 경우 위쪽 동물의 배설물이 아래 동물에게로 떨어지며, 사육장 부실 및 와이어 돌출 등 • 발톱이 너무 길어살에 파고 들거나 휘어서 보행에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 • 방치로 인한 신체 손상 • 복부 팽창, 피부병이 의심되는 과도한 가려움증 및 피부병변, 탈모 등에도 적절한 치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애니멀 호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돌보는 종이나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 • 집안 및 가구가 훼손된 채 방치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 열악 • 집 안팎의 강한 대·소변(암모니아) 냄새 • 바닥에 마른 대변, 소변, 구토물 등이 존재 • 동물이 쇠약하고 무기력하며,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집 안팎에 벼룩과 설치류 확인 • 사람은 사회적 고립상태이며, 자신의 필요에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 • 고통과 질병의 명백한 징후가 있음에도 돌보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주장 	

4

신고의무자

1

-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10조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가능

2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의무자로서 동물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항)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 반려동물 영업자 및 그 종사자
 -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 동물보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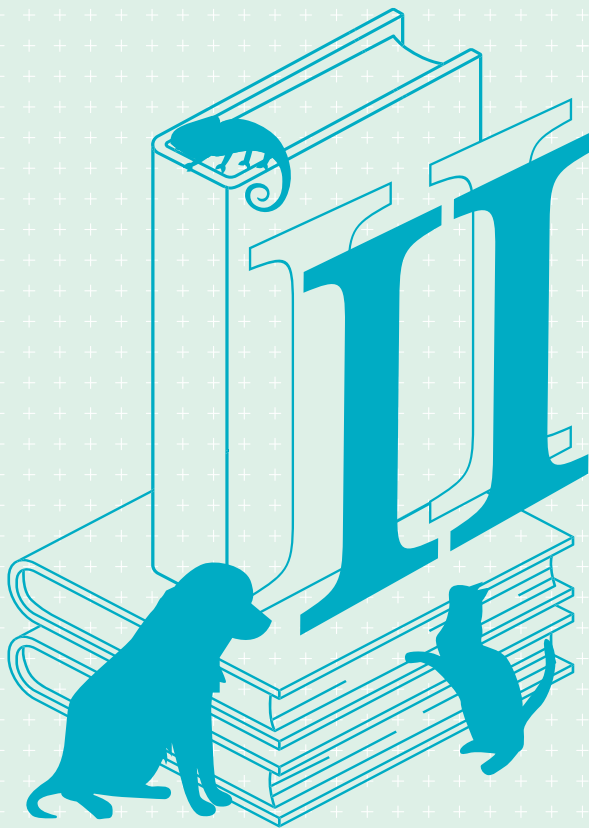
5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용어¹⁸⁾

[표 1-3]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용어

용어	개념 해설	출처
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 다만, 식용목적의 어류, 파충류, 양서류는 제외(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법률
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법률
동물학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	법률
동물학대 범죄	동물학대 중 동물보호법 제10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2호 및 3호를 위반한 죄	매뉴얼
피학대 동물	동물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동물	매뉴얼
추가동물	피학대(의심) 동물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동물학대(의심)행위자가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또 다른 동물	매뉴얼
동물보호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소속 공무원(동물보호법 제88조)	법률
명예 동물보호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위촉한 사람(동물보호법 제90조)	법률
현장출동	동물학대 범죄신고가 접수되어 지체 없이 동물학대범죄의 사실확인 및 중단, 피학대 동물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	매뉴얼
사후출동	현장출동이 아닌 추후에 동물학대범죄의 사실확인 및 중단, 피학대 동물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	매뉴얼
격리조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과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법률
보호조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과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법률
출입·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이 있는 장소에 출입·검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법률
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한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4조)	법률

18) 동물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의 경우 '법률', 동물보호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정의한 용어는 '매뉴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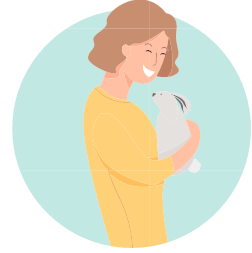


동물학대범죄 유형별 적용법률 및 판례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0
❶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
❷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22
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23
❹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24
❺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26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 주는 행위 등	27	5. 기타	35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7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35
②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28	②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2호	36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	29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36
④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29	④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4호	37
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31		
3.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33		
4.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34		

II 동물학대범죄 유형별 적용법률 및 판례¹⁹⁾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1) 구성요건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2) 해석

-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대해 과거에는 ‘잔인하다’는 개념이 극히 주관적, 상대적이므로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목적 등에 따라 달리 판단(인천지방법원 2017고합70, 2017. 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 2017. 9. 28 선고)

그러나 최근에는 ‘잔인한 방법’을 판단할 때 문언 그대로의 해석보다 동물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는(수원지방법원 2016노755, 2016. 8. 12 선고, 대법원 2014도2477, 2016. 1. 28 선고) 동시에 도살방법의 허용이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대법원 2017도16732, 2018. 9. 13)

잔인한 방법은 문언 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사회 및 시대와 함께 변천해왔으며 과거에 비해 동물의 종류, 해당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도살방법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반영하는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3) 처벌 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약 2미터 길이의 철사로 키우던 개 2마리의 목을 감아 약 1.5m 높이의 나무에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인천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고단6648, 특수협박사건 등과 병합)

19) 본 장에서의 ‘관련 판례’는 구법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 중 유사한 조항에 관한 판례로 참고 및 적용 시 유의

개의 목에 노끈을 묶어 2m 높이의 사다리에 매달아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4 선고 2020고정940)

지인으로부터 지인 소유의 잡종견 2마리를 개짓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많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용 목적으로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질식사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1고정157)

피고인의 집 앞 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형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정778)

■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 A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A가 키우는 기니피그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수회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1640, 특수협박의 점, 폭행의 점 등과 경합)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C,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키우는 흰색 애완견 C를 한손으로 집어 들고 창문 밖으로 던져 추락시킴으로써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정451)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그곳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2년생 흰색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철근처럼 보이는 긴 도구로 위 개를 수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죽게 함으로써,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2고단490)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약 13~14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개를 밧줄로 끌고 가 코를 나무 막대기로 가격하였지만 기절하지 않았음에도 칼로 개의 목을 그어 선 채로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고정 534)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에서 개 약 10마리를 줄로 묶은 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귀 부분에 갖다 대어 감전시킨 후 칼로 목을 찢러 방혈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닭 약 15마리를 양 날개를 잡고 칼로 목을 자르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25 2021고정379, 무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 도살처리의 점 등과 경합)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소유의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여,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 선고(수원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75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반려견인 미니 요크셔테리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좌측 옆구리에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요크셔테리어를 세계 밀어 그곳에 있던 식탁 철제 다리에 위 요크셔테리어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3. 31 선고 2021고정462)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계단 난간 기둥에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회 내리쳐서 두개골이 깨지게 하는 등 고양이 3마리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부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고정859)

길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나,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며 자신에게 덤벼들어 허벅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음 날 피고인이 분양받은 고양이가 물과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자신에게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고양이를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4840)

피고인의 안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나 있던 중 직장동료의 “개가 물어갔다”는 말을 듣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 목덜미를 붙잡아 집어든 다음 개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있던 돌맹이에 수회 내리쳐 죽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벌금 250만원 선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173)

2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1) 구성요건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함

2) 해석

- 문언에서의 ‘공개된 장소’란 노상 바깥 테라스, 개울가 옆 나무, 아파트 화단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뜻하며²⁰⁾, 개인의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로에 접해 바로 볼 수 있는 장소 등도 포함. 동물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해당 장면을 목격했을 때 느낄 사람들의 정서적 충격을 막고,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민정서의 함양 등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 가능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가령 다른 개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개를 죽이는 행위 등이 그 예. 자신과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지만 문언상 같은 종의 다른 동물과 한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눈을 가리거나 시야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한계

3) 처벌 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공개된 장소인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고양이 1마리를 출입문과 바닥에 집어 던져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고단2536)
 77폐교인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내리쳐 동물을 노상에서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4. 29 선고)

20) 박주연 외, 2020, 『동물보호법 강의』, 박영사, p.45.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개울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임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정421)

도로에 접한 공개된 장소인 주택 뒷마당에서 개주인으로부터 "개가 함께 사육하는 닭과 강아지들을 물어 죽여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 처분하라"라는 부탁을 받고 대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개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개를 상대로 불을 쏘아 타게 하는 방법으로 개를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정460)

■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반달가슴곰이 보는 앞에서 곰쓸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수컷 1마리를 도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형을 1년간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2021. 2. 4 2020고단8354)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유기견 네 마리가 차량이 다가오는 방향을 등지고 걸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다른 세 마리의 유기견이 보는 앞에서 그중 한 마리를 역과하여 죽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8 2021고단 367)

피해자가 사육하는 개들이 밤늦게까지 짖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도구인 철근토막(길이 약 1m)을 사용하여, 다른 개 수 마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 595)

개농장에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충격 도살의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 1583)

※ 개농장 등에서 행해지는 도살의 장소가 다른 개가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가능

3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1) 구성요건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함

2) 해석

■ 본 호에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이를 해석한다면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하며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는 구분. 관련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652)에서도 범죄사실에 '먹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죽이고'라고 명시. 단순히 해당 동물을 먹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먹이로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 가능. 다만 해당 동물을 먹이로 제공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본 호에 포섭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잔인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등을 위반한다면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

3) 처벌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콘스네이크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집도 좁아서 새집을 사야 하는데, 낭이를 입양하여 힘들 것 같아 보내려고 한다. 사랑으로 키워주실 분께 드립니다’는 게시글을 보고 콘스네이크를 키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무료로 분양받아 자신이 키우던 킹스네이크의 먹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652)
-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악어에게 살아있는 동물인 기니피그, 토끼를 먹잇감으로 제공하여 악어로 하여금 기니피그와 토끼를 산 채로 물어 죽이게 함으로써 기니피그와 토끼를 학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3173)

4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1) 구성요건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

2) 해석

- 구 동물보호법에서는 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음(네거티브 규제). 반면 2022년 전면개정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그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허용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짐(포지티브 규제).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됨.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각 호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을 적용하여 해석 가능. 형법에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계톱으로 피해견의 등 부위를 절개하여 죽인 사건에 대하여, 주위에 있는 몽둥이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던 사정을 지적하면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란 도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거나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나 면허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 그러나 도축업자가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축 허가를 받은 축종 외의 다른 축종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수의사가 수의학적 필요가 없음에도 안락사²¹⁾를 하는 등의 행위는 허가 및 면허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움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란 공공의 안녕과 이익 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내려진 명령이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목적의 살처분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도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공공의 안전에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맹견(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포함)에 대한 인도적 처리 명령, 행정청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처분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안락사 등이 해당될 수 있음

3) 처벌 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키우던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오자 강아지의 뒷목 부분을 잡고 벽에 던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경합범)(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 7. 26 선고 2019고합152)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여자친구 B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화가 나, B가 기르던 그 소유의 애완견(비송, 생후 7개월)을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상해, 폭행치상 경합범)(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고단1561)

주거지 내 안방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자신이 키우던 개가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벽면을 향해 개를 집어 던져 즉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677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19고단8698, 모 동물단체의 대표가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중인 동물에 대하여 안락사를 지시한 사건에서 동물학대혐의 인정, 수의사라 하더라도 수의학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안락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시사

5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

1) 구성요건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

2) 해석

- 본 호는 문언상 학대 대상이 반려동물이며, 시행규칙 별표2(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의 위반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을 때 적용 가능. 가령 반려동물에 대하여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나 질병이 유발되고 이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 등이 해당. 다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본 호의 구성요건이 되는 제10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 동물생산업에 영위하면서 키우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적용한 판례가 있음에 유의(p.32 참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10.7 선고 2021고단1752

3) 처벌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아파트에서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며 거주하였고,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2021. 3.경에는 양육하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증가. 다수의 고양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환경, 위생 등의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2021. 3.경부터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 2021. 8. 4.경부터 8. 8.경 사이에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 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가 사망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고, 2021. 3. 초순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고양이를 20마리나 키우면서도 분변·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베란다, 주방, 작은방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형을 1년간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3462)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1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구성요건

-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힘

2) 해석

-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도구나 약물 등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적용 사례로는 각종 흥기와 둔기는 물론, 밧줄이나 화장품 통 등의 생활용품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술 등을 먹여 상해를 가한 행위도 포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

3) 처벌조항

-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 철창 우리에서 사육하며 도축하려던 개가 탈출하자, 그곳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노상까지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울무'로 개의 뒷다리를 걸어 매달고 땅바닥에 강제로 짓눌러 끌고 간 후 쇠파이프로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개의 입과 코에 피가 나게 하고 뒷다리, 몸통 부분 털이 빠지고 피멍이 들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한 피고인 A와 A가 '쇠파이프울무'로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인 개를 매달아 끌고 상해를 입히고, 신체에 손상을 가함에 있어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6월의 집행유예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4. 24 선고 2017고단2001)

노상에서 진돗개의 등 뒤에 올라 탄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개의 항문에 삽입을 시도하고, 목이 개줄에 묶여져 있는 상태로 개의 앞다리를 잡아 공중에 띄우고, 개의 항문에 입을 갖다 대는 등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개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大驚(scare)'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식음습벽 및 정신과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강제추행, 공연음란 사건 병합)(대구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2662, 3802(병합))

마을 주민 소유의 개가 줄에 묶이지 않은 채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개에게 헌팅마스터RS(산탄)를 발사함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29 선고 2014고정1140)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기르는 개(핏불 잡종) 2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묶은 뒤 자신의 농장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2km 떨어진 자신의 농장으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개들이 제대로 승용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더욱 높여 진행하고, 개들이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약 300m 가량 개들을 끌고 다녀 상처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병합)(제주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218)

2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1) 구성요건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장치를 설치

2) 해석

- 특정한 도구나 방법, 장소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적용 범위가 넓으며,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발로 차거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행위에도 적용 가능. 그러나 본 조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해라는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행위에는 적용 제한. 한 예로 유튜버가 자신이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분을 강제로 붙잡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침대로 집어던진 사건에서도 상해에 이르는 흔적 등을 확인하지 못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구법 제8조 제2항 제4호)를 적용

단,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단서조항은 질병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

3) 처벌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과 딸이 키우는 애완견 푸들 강아지를 두개골 골절, 목뼈 골절, 코와 폐에서 출혈이 나게 하여 학대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정1667)

※ 위 사건의 경우 도구의 사용여부나 학대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적용

피해자 소유의 풍산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치료감호 선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2017. 11. 17 선고 2017고합197)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가 키우는 살아있는 말티즈의 복부를 갈라 내장이 쏟아지는 창상에 의한 복벽손실 등을 발생하게 하여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7 선고 2018고단857)

3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

1) 구성요건

-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힘

2) 해석

- ▣ 본 호는 투견, 투계와 같이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광고·오락·유흥 등에 이용함으로써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견 목적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경우에는 본 호의 적용이 어려우나,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다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은 제외

3) 처벌조항

-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 피고인은 비닐하우스(150평) 2개 동을 임대받아 철제 투견 링을 설치하여 투견 및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견 도박에서 이긴 쪽의 판돈의 20%를 속칭 프로모터비로 받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도사견 2마리가 서로 격렬하게 싸우게 한 후, 도사견 중 1마리가 상처를 입거나 도주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면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견도박을 하고, 도사견의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3 선고 2017고단290)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의 야산 공터 등에서 '핏불 테리어' 투견장을 설치하여 투견 도박 경기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배팅하도록 하여 투견경기에서 승한 투견에 돈을 건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당 4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8회 개장. '핏불 테리어'를 투견 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상대방 개를 상해 내지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여 벌금 5백만원 선고(서울중앙지법 2013고정 2014. 6. 24 선고 6808)

4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및 각 목

1) 구성요건

- ▣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힘

2) 해석

- ▣ 본 호는 구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상해가 동반되지 않는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다만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각 목의 행위를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

금지되는 행위로는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 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열거

3) 처벌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근린공원에서 자신의 소형견 2마리와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잡아당겨 개들이 공중에 뜨게 한 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수회 돌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함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고정1235)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자를 향해 짖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반려견의 배를 1회 차 피해 동물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정1697)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중 키우던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분을 강제로 붙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4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뒤이어 위 반려견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강하게 집어 던짐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시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7471)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의 목줄을 당기고 손으로 개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개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고정1127)



5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

1) 구성요건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

2) 해석

- 본 호는 애니멀 호딩 방지를 위해 도입. 시행규칙 별표2(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

적용 대상은 반려동물로 한정되며, 사육·관리 의무위반과 상해 및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움(개우리 14개를 설치하여 개 81마리를 사육하면서, 개들에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부병이 걸린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배설물과 죽은 개의 사체를 치우지 아니하여 개들에게 질병에 걸리게 하였으며,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많은 개들을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도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과 상해를 입혔음에도 해당 동물들이 반려동물이 아니므로 본 호가 아닌 구법 제8조 제2항 제4호를 적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선고 2019고정56). 다만 최근에는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면서 키우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본호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아래 판례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1. 동물의 사육공간(동물이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곳으로서 벽, 칸막이,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설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마.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하되,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을 것.
 - 바.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곰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동물이 그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사. 동물의 사육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것

3) 처벌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3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농장에서 개들을 사육, 교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개를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하면서 2019. 8.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약 20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적합한 먹이를 먹이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2마리의 개에게 욕창, 탈장 등 질병을 유발시키고도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752, 사료제조공정 위반의 점, 무면허 진료행위의 점,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등과 경합)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5. 28. 11:00경까지 3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 철재우리를 만든 후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양이를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하면서 고양이들에게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위고양이들에게 귀진드기, 양측결막염, 상부호흡기감염증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고도 신속하게 수의사의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고단3155, 무허가영업의 점, 무면허동물진료의 점 등과 경합)



3

유실·유기 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및 각호)

1) 구성요건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 포획하여 죽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2) 해석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 등 소유자등이 부재해 동물학대 등에 취약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판매 혹은 이를 목적으로 임의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의 범위는 유실동물뿐 아니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포함. 실제 판례에서도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인 사건에서 본항을 적용

다만 문언상으로는 실제 죽이지는 않았음에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획의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3) 처벌조항

- 1)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2) 포획하여 판매 또는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4) 관련 판례

- 주택 근처 도로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어묵 등을 넣어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 약 6마리를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에 약 3마리 내지 5마리를 넣고 빠져 나오지 못하게 덮개를 덮은 다음,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하여 총 600마리의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 8. 10 선고 2016노799)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레브라도리트리버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에 싣고 가 습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포획한 개를 탕제원 업주에게 4만원을 대가로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포획한 사실을 모르는 탕제원 업주로 하여금 개를 죽이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8 선고 2017고단1870)



4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

1) 구성요건

-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遺棄)

2) 해석

- 본 항에서는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 소유자등에는 동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육·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 여기에서 유기는 소유자등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동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가령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해당 동물을 입소시키는 경우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입소가 목적이거나 하더라도 동물을 몰래 동물보호센터 인근에 버리고 가는 행위는 해당 동물이 적절한 보호·관리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이므로 유기에 해당.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과거에는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다루었으나 2020. 2. 11 개정을 통해 벌금형으로 전환(2021. 2. 11 시행)

3) 처벌조항

- 1) 맹견을 유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 2)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

4) 관련 판례

- 2022.11.5 서울 강동구 소재 건물 계단에서 자신이 소유하며 키워오던 반려견 푸들 1마리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종이상자에 넣어 버림으로써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3고정84)

2021. 12. 30. 12:05경 반려 목적으로 관리 또는 보호하고 있던 동물인 개 3마리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고 이사하여 2021. 1. 7.경까지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1. 8 선고 2022고단779)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이 연락되지 않자 화가 나 고양이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향해 집어 던진 뒤 고양이를 그대로 두고 가는 방법으로 버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9. 7 선고 2022고정116, 재물손괴의 점과 경합)

공원 출입구 옆 배수로에 자신의 소유인 고양이를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정1165).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른 고양이들이 많이 노는 장소에 고양이를 풀어주어 뛰어놀 수 있도록 했고, 고양이 가방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로 등 옆 배수로에 숨겨두었으며, 두 아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와 보니, 고양이와 가방이 사라져 1시간 정도 찾아 헤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장소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소로 알려진 사실, 피고인이 고양이를 풀어 놓고 가방 앞에 고양이 사료가 든 희색 비닐봉투를 함께 놓아둔 사실, 피고인과 아들들이 사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고양이와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고양이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늘 데리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양이를 유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며 유죄 선고

태어난지 2개월 된 토끼를 분양받아 기르던 중, 같은 해 불상의 이유로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토끼를 이동장에 담아 지하철 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버린 피고인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정2420)

5

기타

1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1) 구성요건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해석

- 최근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물학대 콘텐츠 유통이 크게 증가하면서²²⁾ 사회적 경각심 제고 필요.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 등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위가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콘텐츠가 확산될수록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거나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 등으로 금지. 해당 영상이 외국에서 촬영된 사진·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 가능. 그러나 단순히 동물학대 사진·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처벌하지는 아니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거나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

3) 처벌 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2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4) 관련 판례

-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분을 강제로 붙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4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뒤이어 위 반려견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로 강하게 집어던짐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원 선고(인천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고단7471)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잔혹·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직전 해인 2021년 한해 동안의 시정요구 건수(36건)보다도 183% 증가

2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2호

1) 구성요건

-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

2) 해석

-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가 도박·광고·오락·유희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여기에서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을 하는 행위까지 금지. 투견 및 투계와 같이 동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형태의 도박을 행할 경우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가령 개를 서로 경주시키는 형태의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다만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등은 제외

3) 처벌 조항

-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3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3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1) 구성요건

-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희·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2) 해석

- ▣ 과거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기계 안에 넣어 놓고 이를 인형뽑기와 같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유행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본 조항 도입(다만 바닷가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 불가).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축제를 열며 경품으로 황소를 제공한 것처럼 지자체 행사 등에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3) 처벌 조항

-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4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4호

1) 구성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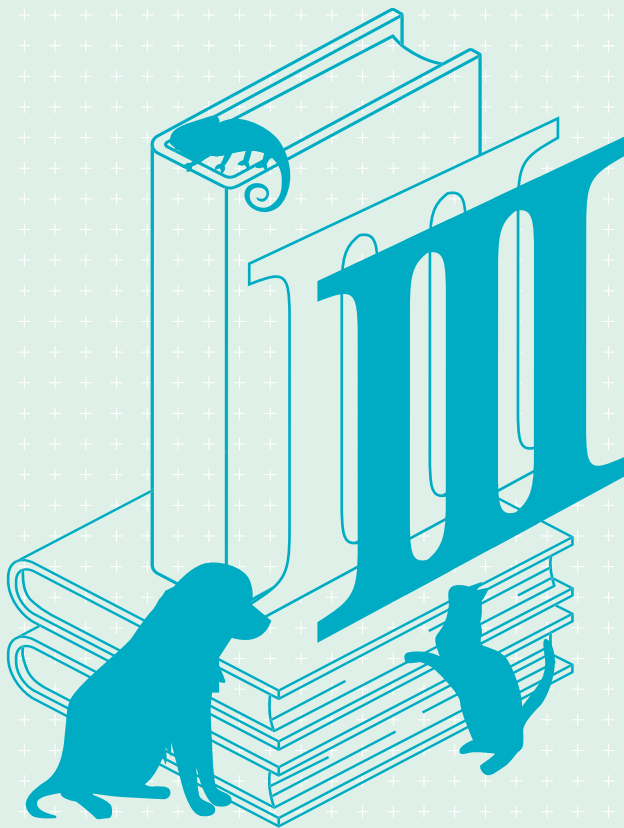
2) 해석

-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통해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함)는 예외적으로 허용.

3) 처벌 조항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5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사건의 처리

1. 동물학대 대응주체의 권한과 역할	40
① 동물보호관의 권한과 역할	40
② 명예동물보호관의 권한과 역할	41
③ 경찰의 권한과 역할	42
2. 동물학대사건 대응체계에 따른 업무흐름도	43

3. 단계별 처리절차	44		
① 신고접수	44	⑥ 격리 및 보호조치	60
② 동물학대범죄여부 및 긴급성 판단	45	⑦ 시정명령	63
③ 현장출동	47	⑧ 격리조치 동물의 반환 및 소유권 취득	64
④ 동물학대조사(출입·검사)	48	⑨ 동물학대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66
⑤ 피학대 동물의 응급처치 및 이송	56	⑩ 시정명령 및 사육계획 이행 여부 점검	70

III 동물학대사건의 처리



1 동물학대 대응 주체의 권한과 역할

1 동물보호관의 권한과 역할

- 1) 지정근거 : 동물보호법 제8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2항
- 2) 주요 직무(동물보호법 제8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법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한 지도
 -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보호동물 관리에 관한 감독
 - 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감독
 - 법 제86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지도
 -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 3) 동물보호관의 권한
 -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및 각호)
 -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
 -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²³⁾
 -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음의 시정명령(시행규칙 제54조)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 다음 동물에 대한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및 제34조에 따른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동물보호법 제89조)

23) 동물보호관의 출입·검사는 범죄 진압 등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강제진입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 달리 출입·검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집행은 불가. 다만 출입·검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4) 동물보호관의 역할

-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법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에 대한 신고 접수
- 동물학대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및 이를 위해 시정조치 명령
- 법 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신고 및 고발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및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격리조치 - ①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사실에 대한 공고 - ②
- ①, ②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반환 시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접수와 보호비용 청구 등
- ①, ②에 해당하는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2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

- 1) 지정근거 : 동물보호법 제9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 2) 동물학대 관련 역할(동물보호법 제9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3항)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3)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범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 위임)이 위촉한 경우 : 전국
 - 시·도지사가 위촉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
- 4) 명예동물보호관의 권한
 - 명예동물보호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3

경찰의 권한과 역할

- 1) 범죄에 대한 예방·진압 및 수사를 담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 2) 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사건은 경찰을 통해 접수하고, 범죄사실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 지원 가능(동물보호법 제39조 제4항)

[표 III-1] 동물학대 대응 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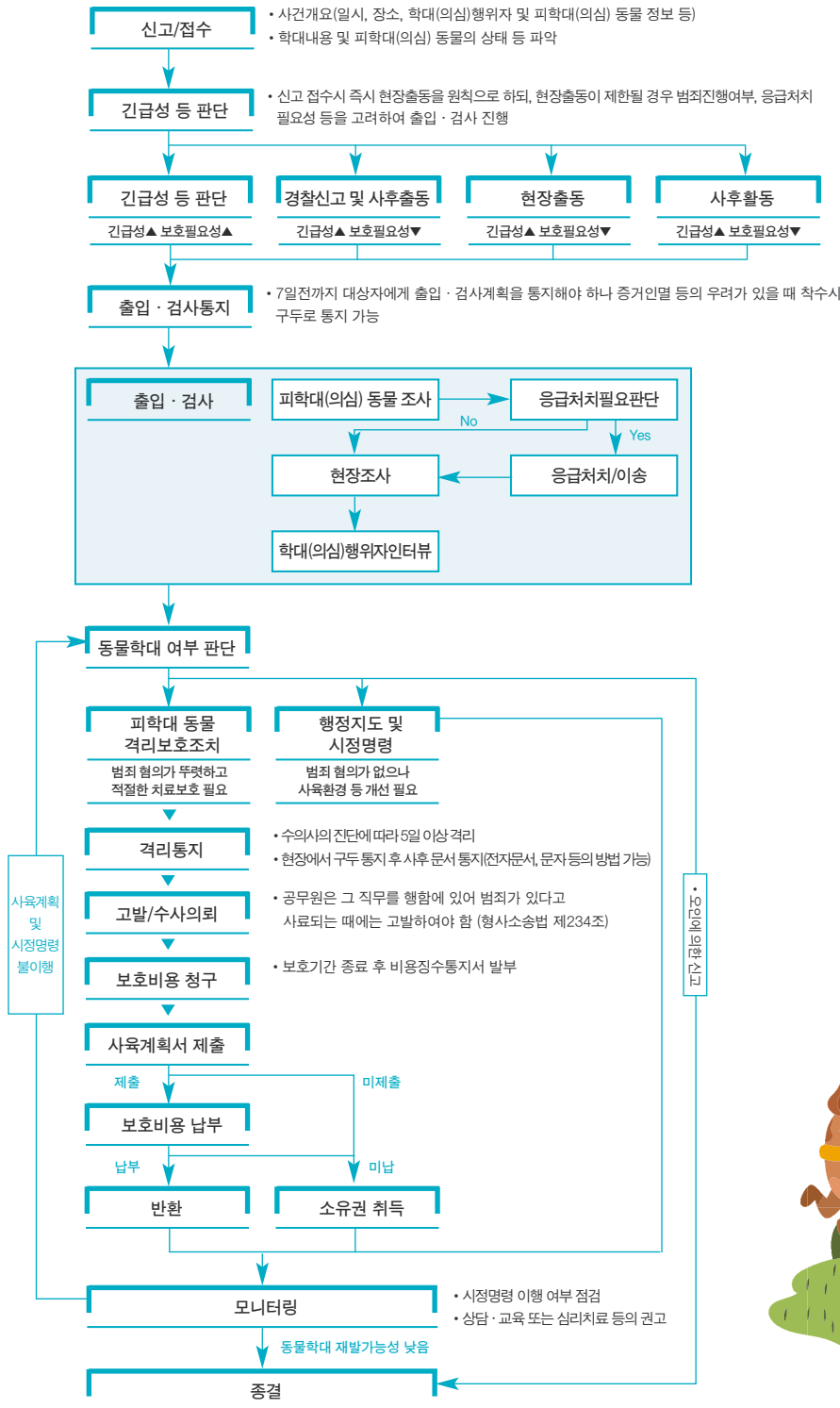
구분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관	경찰
목적	피학대 동물보호	피학대 동물보호	범죄에 대한 예방·진압 및 수사
역할	피학대(의심) 동물 조사, 지자체가 설치한 CCTV 열람(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학대 여부 판단, 피학대 동물의 격리/보호조치	동물보호관 활동의 보조 및 지원	동물학대(의심)행위자, 주변인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CCTV 열람 및 확보



2

동물학대사건 업무 흐름도

[그림 III-1] 동물학대사건 업무 흐름도



3

단계별 처리절차²⁴⁾

1

신고접수

1) 동물학대의 신고

-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가능(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 사건 대응에 있어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동물보호법 제39조 제3항)

2) 신고접수

① 신고접수 시 파악하여야 할 정보

신고자가 동물학대(의심) 행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동물학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고 있거나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장조사, 경찰신고,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 등 이후 대응을 위해서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1) 신고자가 동물학대를 의심하거나 인지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

-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추가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 등을 위해 동물학대 의심 사건을 인지하거나 접하게 된 경위를 파악
- 예) 가족의 동물학대행위 경험, 이웃의 동물학대 행위 목격, 여행지에서 방치된 동물 발견 등

(2) 동물학대 의심 내용

- 동물학대행위의 발생시기 및 발생빈도
- 동물학대행위의 유형(죽임, 상해, 방치/방임 등)
- 도구 및 약품의 사용 여부와 그 종류
- 동물학대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 동물학대행위의 심각성

(3) 피학대(의심) 동물의 특징

- 축종(예 : 개, 고양이, 토끼 등) 및 품종(예 : 포메라니안, 치와와, 코리안숏헤어 등)
- 피학대(의심) 동물의 성별
- 모색 및 외형
- 추정 연령(구분이 어려울 경우 새끼인지 성체인지), 기타 특징
- ▶ 동물학대(의심) 행위자가 여러 마리의 동물을 사육 중인 경우 피학대 동물의 특징에 용이

(4) 피학대 동물의 현재 상황

- 피학대 동물의 상태(생사, 상해, 질병 여부와 정도)
- 응급조치 필요 여부
- 현재 누구의 관리/보호 아래 있는지(동물학대(의심) 행위자, 보호자, 외부 방치 등)

24) 동물학대 사건의 처리 단계별 확인 및 수행해야 할 사항은 부록의 '동물학대사건 대응 단계별 점검표' 참조

(5) 동물학대(의심) 행위자 관련사항

- 인적사항(이름, 성별, 주소, 추정연령, 연락처)
- 피학대 동물과의 관계
- 공동행위자 또는 조력자 유무
- 피학대 동물 외 추가 동물의 사육여부 등

(6) 신고자 관련사항

- 인적사항(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추가적인 정보제공이나 현장조사 시 조력 여부

(7) 기타

- 경찰신고 여부, 유관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제보 여부, 긴급사안 여부 등

② 신고 대응 요령

(1) 신고접수자의 태도

- 신고 내용을 경청해야 하며, 동물 관련 사건이라 하여 가벼이 여기는 발언이나 태도 지양
- 동물학대사건을 목격한 신고자는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해야 할 정보를 확인
-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자제해야 하며, 동물학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

(2) 신고자 보호

- 동물학대 신고자는 동물학대(의심) 행위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사례 발생
- 신고자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고자가 불안해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39조 제3항(신고인의 신분 보장)을 안내
- 특히 현장 검사 또는 사후 동물학대(의심) 행위자의 항의 시 신고자 관련 사항이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은 최소한으로만 파악

2

동물학대범죄 여부 및 긴급성 판단

1) 동물학대범죄 여부 판단(II. 동물학대범죄 유형별 적용법률 및 판례 참조)

① 동물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현장출동(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 요청)
- 동물학대사실 확인, 피학대(의심) 동물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조치 시행
- 동물학대범죄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학대행위를 제지

② 동물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 현장을 방문하여 동물의 사육환경 및 위생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9조와 시행규칙 별표1, 별표2(반려동물인 경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 준수에 대해 점검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되,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및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가능(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4조)

2) 긴급성 판단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 (1) 동물학대행위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 직후인 경우
- (2) 동물학대행위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한 직후에는 추가적인 동물학대행위 및 피학대 동물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히 동물학대행위를 제지해야 함
- (3) 피학대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 동물학대(의심)행위로 인해 동물의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 (4) 추가적인 학대발생 가능성
 - 피학대(의심) 동물과 동물학대(의심)행위자 사이의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대 재발 우려가 높은 경우(동물학대(의심)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피학대(의심) 동물 외의 추가동물이 있고, 해당 동물로까지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② 긴급성이 낮은 경우

- (1) 동물학대(의심)행위가 발생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지 않은 경우
 - 신고당시 동물학대(의심)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이미 상당시간이 지나 동물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사이 동물학대(의심)행위가 반복되지 않은 경우
 - 대부분의 가벼운 타박상은 2주 이내 자연치유가 되며, 절개된 상처의 경우 치유에 3~4주정도 소요
 - ※ 긴급을 요하는 내용과 긴급성이 낮은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대응
- (2) 구조 및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i) 피학대(의심) 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
 - 동물학대 사건에서 동물보호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대행위를 중지시키고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현장출동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즉시 현장출동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된 내용을 전달
 - 피학대 동물 외 추가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동물에 대한 학대우려와 보호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현장출동이 필요함
 - ii) 피학대(의심) 동물이 동물학대(의심)행위자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동물학대범죄가 충분히 의심되나 피학대(의심) 동물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범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사후 동물학대조사 진행
- (3) 동물학대 피해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내용이 동물학대 피해나 동물학대범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나, 동물학대(의심)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가 중복될 경우 현장출동

3

현장출동

1) 현장출동 시점

- 동물학대(의심)행위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안의 긴급성, 심각성 및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 정하여 출입·검사 및 피학대 동물의 격리·보호조치를 시행

2) 112 신고 및 경찰의 출동 요청

- 현행 동물보호법 등에는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동물보호관의 112 신고 및 경찰의 출동 요청에 관한 규정은 부재. 하지만 출입·검사 및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 등에 있어 사건의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의 협조 중요. 경찰 역시 동물학대 의심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 또는 동물학대 유형에 따라 출동·지령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인 동물보호관에게 통보하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²⁵⁾
- 범죄에 대한 예방·진압 및 수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동시에 현장에 입장하여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가능

[표 III-2] 경찰 출동 요청 및 단독출동 예시

구분	동물학대 상황
경찰 출동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 직후인 경우 • 동물학대(의심)로 인해 피학대 동물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건인 경우 • 동물학대(의심)행위로 1회 이상 신고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흉기나 둔기와 같은 도구 사용 혹은 기물파손 등 물리적 위험성 동반
단독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의심)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고 피학대 동물이 분리되어 있음 • 현재 학대가 발생하지 않고, 동물학대(의심)행위자와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어 추가적인 학대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동물학대 피해가 불분명한 경우

※ 경찰에게는 법률에 근거한 피학대 동물 격리 권한이 없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라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 또 동물학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으며²⁶⁾,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시에 피동물학대(의심)행위자의 증거 인멸이 염려 되거나 도망하는 경우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²⁷⁾ 가능

25) 경찰청, 2021, 「동물범죄 벌칙해설」

26)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도 현행범인으로 간주

2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는 긴급체포 대상 범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가 아니라면 긴급체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동물학대 조사(출입·검사)

1) 동물학대조사 원칙

① 신속한 대응

-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치료 또는 자연치유에 따라 상흔이 사라져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 발생. 혹은 반복적인 학대상황에 노출되거나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해 상해나 질병이 더욱 심해지고, 경우에 따라 해당 동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동물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함

② 동물보호 우선

- 동물이 학대를 받거나 받은 걸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동물보호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동물의 보호에 있음을 상기
- 현장조사 및 격리 및 보호조치 등 일련의 과정은 해당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진행

③ 피학대(의심) 동물에 대한 직접 확인

-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동물이 있는 장소에 출입을 거부하거나 동물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동물학대 사건 대응의 핵심은 초기에 피학대(의심)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꼭 해당 동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
- 피학대(의심) 동물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현 소재지, 상태, 이동 시점 및 이유 등에 대해 세세히 파악

④ 철저한 조사자료 수집과 기록

- 현장조사 과정에서의 자료들은 향후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결정 및 기간, 학대자의 고발 시 근거 자료가 되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 당해 동물학대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수집
- 필요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하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 특히 대화를 녹취하고자 할 때는 조사대상자에게 녹취사실을 고지해야 함(무단 비밀 녹취 불가)

정부부처 공무원이 공익신고 조력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 행정소송의 서증으로 제출하자 공인 신고 조력자와 관계자들이 '음성권 침해'라며 국가와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 결과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2022.9.2 선고, 2021가단5160620)

⑤ 2인 이상 동행

-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갈 때에는 조사자의 안전과 세밀한 조사 및 기록,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급적 2인 이상이 동행

2) 동물학대 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

① 조사 준비

(1) 관계법령의 검토

- 동물학대 사건은 그 대상이 동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육목적 등에 따라 학대(의심) 행위가 동물학대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동물학대 외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 필요

[표 III-3] 동물 관련 불법행위 및 관련 법령

불법행위 예	관련 법령
동물 사체 무단 투기 및 매립	폐기물관리법
동물의 무허가 도축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에 대한 불법 진료행위	수의사법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가축사육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올무 등 불법포획 도구 제작 및 설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출동 및 협조 요청

- 동물학대사건 대응 시 경찰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를, 동물보호관은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등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 등을 행함에 있어 소유자등의 저항 및 위협 등이 있을 수 있어 현장조사 시 필요하다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학대(의심)행위가 진행 중일 때는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 학대(의심)행위를 중단시켜야 함
- 또 동물의 응급처치 및 학대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수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동반이 권장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지역수의사회의 협조를 구하거나 동반 가능한 수의사를 파악

[서울 강동구 사례] 강동구의 경우 동물학대사건 발생 시 동반출동 또는 보호조치 피학대 동물의 진료가능한 수의사를 파악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 동물학대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 보장



(3) 물품 및 장비 점검

[표 III-4] 동물학대 현장 출동 시 물품 및 장비 점검 목록

구분	물품/장비	용도	비고
문서 / 증표	동물보호관증		
	출입·검사 통지	출입·검사 시 제시	증거인멸이 우려될 때는 착수 시점에서 구두로 통지 가능
	출입·검사 안내 팸플릿		관련근거 및 과태료 조항 등 삽입
	동물학대 체크리스트	동물학대 여부 / 보호조치 판단	
	영치조서	자료등의 영치시 교부	2부 작성 후 1부 교부
구조 / 포획 장비	목줄	피학대 동물 포획, 조사, 이동	
	넥카라		
	포획장갑	피학대 동물 포획, 조사	
	켄넬	피학대 동물 격리, 이동	
	배변패드	피학대 동물 격리, 이동	
	담요	피학대 동물 격리, 이동	
증거 수집 물품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피학대(의심) 동물 사체 운반	사체의 경우 냉동보관 금지
	카메라	사육환경, 동물의 상태 기록	
	녹취기	학대행위(의심)자 조사 기록	사전고지 필수
	줄자	피학대 동물 상흔 확인, 사육공간 및 사육환경 측정	
	증거물채취 키트	동물학대범죄 흔적(혈흔, 토사물, 도구 등) 및 증거	멸균면봉, 거즈, 식염수, 멸균 포장재(종이), 보관용 봉투 등
의약품	응급키트	피학대 동물 응급처치	멸균거즈, 거즈, 솜봉대, 탄력봉대, 식염수, 3M 의료용테이프, 깨끗한 수건, 담요, 2L 이상의 물병, 물 그릇, 가위, 에탄올, 동물용 체온계, 다양한 사이즈의 넥카라, 다양한 사이즈의 입마개
기타	마이크로칩 스캐너	동물등록 확인	등록대상동물에 한함

② 현장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 신고자가 동물학대사건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사자는 신고된 내용과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학대 내용도 조사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신고 내용이 동물학대(의심)행위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의심) 동물의 상처 및 정황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대징후 및 학대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야 함
- 특히 피해(의심) 동물로부터 상처·멍 등 신체적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① 상흔 부위(위치) ② 발생 경위 ③ 멍의 색깔이 중요하며 조사자는 상흔에 대해 발생시기,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상흔 발생 경위에 대해 확인해야 함

③ 출입·검사 통지

(1) 출입·검사 통지 의무

-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86조 제6항에 따라 출입·검사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출입·검사 목적, 기간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해야 함
-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 가능

(2) 통지방법

- 동물보호법에는 통지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서는 행정조사(출입·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 가능
- 당사자가 동물학대(의심) 장소에 부재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전화 통화로도 통지 가능
- 당사자의 부재 및 연락 불가로 당일 현장조사가 어렵다면 조사 안내문을 남겨서 동물학대 행위(의심)자가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요청

(3) 통지내용 : 1. 출입·검사 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4) 통지 시 유의사항

- 신고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동물학대(의심)행위자 등 관계인이 이에 대해 묻더라도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누설하면 안 됨

▷ “동물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게 해 달라”(X)

“옆집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X)

▶ “동물보호법상 신고인의 신분을 밝힐 수 없고, 동물보호관은 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이 있습니다.”(O)

④ 학대(의심)장소 출입

(1) 출입·검사 통지 의무

- 동물보호법에는 출입·검사를 위한 강제출입조항이 없어 소유자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출입 불가
- 다만 경찰은 동물학대범죄가 진행중이거나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 가능(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이때 동물학대범죄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진행 중이라고 강하게 의심될 때에는 강제출입 가능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⑤ 피학대(의심) 동물에 대한 조사

- 현장 조사 시에는 피학대(의심) 동물의 학대 여부와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
- 신고된 피학대(의심) 동물이 맞는지 확인. 특히 같은 종의 동물의 여러 마리인 경우 품종, 모색, 크기, 특징 등이 일치하는지 비교(※ 동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생체분비물을 통해 유전자감식을 행할 수 있으며, 동물 종(種) 식별이 가능함. 또한, 같은 종의 동물이 여러 마리인 경우, 개는 동일 개체 판단을 위한 개체식별 분석 가능)
- 피학대(의심) 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 사체 역시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이므로 사체를 매장하거나 폐기처리 하지 않도록 주의. 사체를 수습하기 전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 후 흙을 털어 내거나 구토물을 닦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최대한 그대로 아이스박스 등에 냉장 보관(※ 사체를 냉동 보관할 경우 조직 등이 손상되어 사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 발생).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사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동물검사 의뢰(동물보호법 제39조 제4항).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사를 의뢰하고자 한다면, 제출서류²⁸⁾를 준비하여 공문에 붙임으로 발송하여 검사를 접수할 수 있음. 이때 수신자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으로 설정하여 발송해야 함. 검체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전연락을 취한 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물검사 후 사체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동물검사 의뢰 전 소유자들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
- 피학대(의심) 동물이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등록조회,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표 III-5] 등록대상 동물과 과태료 부과 기준 ²⁹⁾

등록대상	등록대상 동물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간혹 수렵 또는 경비목적으로 사육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으나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사육 목적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임.		
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금액	20	40	60

- 등록이 되어 있으나 등록된 소유자와 동물학대(의심) 행위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동물보호법 제34조 제2항)
- 피해(의심) 동물의 상태와 상흔 등이 신고된 내용과 합치하는지 확인
- 털에 가려 상흔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실제로는 아위었으나 털로 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동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는 털 안쪽에 가려진 상흔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 피학대(의심) 동물은 신체적 고통 및 심리적 공포 등으로 인해 공격적 성향을 띌 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고 조사 시 목줄 및 넥카라 등을 채워 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 동물학대 사건은 동물의 진술능력이 부재하므로 사건 초기에 학대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물에 대한 조사 시에도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록

28) 동물검사 의뢰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병성감정 의뢰서 1부(반려동물용 또는 산업동물용 1부), 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2부(의뢰인용 1부와 보호자용 1부), 3. 사체 발견 현장 사진이 있음. 제출서류의 양식은 매뉴얼의 'V. 부록'의 '2. 관련 서식'을 참조할 것.

[표 III-6] 상해유형별 동물학대 징후 및 조사방법

상해유형	비우발적 부상(NAI)의 징후	조사 내용 및 방법
찰과상 또는 타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부, 복부, 머리, 목에서 흔하게 관찰 • 경우에 따라 털에 멍 등이 덮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 사진 촬영 • 크기와 분포를 기록(도표 이용) • 멍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위 제모 후 관찰 권장 • 부상의 크기와 형태를 바탕으로 학대도구 종류 평가
결찰(목조름 등)에 의한 질식(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도의 눌림. • 후두부, 입술, 혀, 눈꺼풀 등의 부종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주위의 사흔, 부상 등이 증거로 작용 • 필요한 경우 흉반이나 멍 확인을 위해 해당부위 제모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로 인한 화상 • 발에 입은 화상 • 부식성 또는 화학적 화상 • 동물에게서 화학 물질 또는 촉진제의 냄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 사진 • 화상의 분포, 크기 및 심각도 기록 (도표에 표시) • 담배의 경우, 유전자감식으로 흡연자의 유전자 분석 가능, 가해자와의 유전자형 비교로 일치여부 확인
투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 목, 앞다리에 특징적인 교상 발생 • 반복된 싸움과 무거운 체인 사용에 따른 겹쳐진 흉터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와 흉터가 있는 사진 촬영 • 상처 부위 등을 기록(도표에 기록) • 새로운상처에는 한가지 색 사용, 흉터에는 대조색 사용
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젖은 상태일 수 있음 • 몸부림친 흔적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 • 흉부 방사선 촬영 (폐침윤, 폐부종 관찰)(동물검사 등 필요) • 몸부림친 흔적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억제된 징후 확인
약물/독극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감각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보일 수 있으며, 독소 섭취의 신체적 징후(떨림, 구토, 무기력 등)도 관찰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과 몸의 상태를 모두 기록 • 혈구 및 혈액 검사 • 구토물에 대한 검사
살을 파고 들어간 목졸/목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주변에 만성적인 부상 관찰 • 세균감염, 고름, 괴사의 냄새가 남 • 목걸이가 있지만 살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걸이를 제거하기 전과 수술로 제거한 이후의 사진 모두 촬영해야 함 • 목과 목걸이의 상처의 길이 및 너비, 깊이의 정도를 측정하여 문서로 작성
눈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막이나 흰자위(공막) 출혈, 안구돌출등이 관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부상 및 연관된 증상 및 부상을 사진 촬영함
발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톱이 닳음 • 손상되거나 부상 상태의 발바닥 패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변을 기록&문서화해야 함 • 만약 발바닥에 더러운 사육환경에 의한 궤양이 관찰 되면 오래된 배설물의 냄새 또한 기록 되어야 함
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상으로 의심되는 상처의 입구에 털이 상처 안쪽으로 향해있거나 상처의 출구의 털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도표에 상처의 위치를 기록 • 방사선 및 CT 촬영 후 총탄 검색을 위한 수술 또는 동물검사의뢰
머리 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절이나 타박상으로 인해 육안으로 봤을 때 비대칭의 형태를 띠 • 피학대 동물의 인지력, 의식의 변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와 병변을 그림 도표에 기록 • 신경 관련 검사를 진행함
내상(예: 복부 내 기관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이나 부상의 징후가 애매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이 없어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통증 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부록 참고)
칼에 의한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관통 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상처의 길이를 확인하고 내부로의 깊이 확인을 위한 수술 또는 동물검사의뢰
반복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이 치유되는 단계가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주에 대한 동물의 행동에서 두려움, 공포, 공격성 등이 보이지 않는지 관찰해봐야 함 • 상처/병변과 관련된 그림 도표를 작성
굶주림 (영양 실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약해져 있으며 이식증(대변, 소화 안 되는 물질 (예: 플라스틱, 흙, 돌 등)을 섭취하는 이상행동)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상태 평가에 필요한 BCS(Body Condition Score)를 통해 체형의 점수를 매김 • 이때 어느 BCS 기준을 사용하였는지 명확히 해야 함 (예: Royal Canin BCS, Purina BCS. (부록 참고))

29)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III-7] 우발적 부상과 비우발적 부상 비교

양상 및 병변	차량 등에 의한 우발적 부상 (Motor Vehicle Accident injury)	비우발적 부상 (Non Accidental Injury(NAI))
찰과상들	주로 관찰됨 (도로에 굽힌 상처)	주로 관찰되지 않음
닿은 발톱	주로 관찰됨	주로 관찰되지 않음
흉부 외상	흉부내부상(기흉, 폐에타박상)이 갈비뼈 골절보다 흔함	갈비뼈 골절이 흔함
갈비뼈 골절	한쪽 갈비뼈 골절이 흔함. 머리쪽 갈비뼈가 골절되는 것이 주로 관찰됨	한쪽 갈비뼈만 부러질 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 부러지는 사례도 다수. 머리쪽 갈비뼈, 엉덩이쪽 갈비뼈 패턴이 없음. 둘 다 부러질 수 있음.
갈비뼈 이외 골절	골반, 장골들	장골, 두개골, 치아, 척추. 예전에 골절된 부위가 있는 경우가 흔함.
골절의 위치	머리쪽이거나 엉덩이쪽 (양쪽 모두일 확률은 낮음)	머리쪽이거나 엉덩이쪽이거나 양쪽 모두일 가능성 있음
다른 부상들	벗겨진 상처가 관찰되며 입이나 상처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음	머리 부상, 흰자위(공막) 출혈, 발톱의 손상
위치	한쪽 옆구리에 찰과상이 있거나 바닥과의 마찰로 인해 중앙부위의 찰과상	몸의 오목한(튀어나온) 부위나 보호되어지는 신체부위의 부상
시간	모든 부상은 치유 단계가 같음	다양한 치유 단계의 다수의 부상

- ※ 둔기 외상 관련 부상의 유형은 다양하며, 정확한 원인 구별이 어려울 수 있음
- ※ 비우발적 부상은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나 운송차량에 의한 우발적 부상과 흡사한 양상으로 보일 수 있음.
- ※ 우발적인 부상과 비우발적인 부상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물리적 징후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따라서 주변인 또는 소유주(보호자)의 진술을 세부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증상과 연관되어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함.

⑥ 학대발생장소 조사

- 신고된 현장 출입 또는 피해(의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장소가 가정인 경우 반드시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 실시
- 사건 정황에 대한 진술, 학대 시 사용한 도구, 피해(의심) 동물의 상흔이 모두 일치하는지, 신고된 피해대(의심) 동물 외 추가동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학대가 발생한 현장에서 면밀한 관찰 필요

⑦ 피학대(의심) 동물 외 추가 동물에 대한 조사

- 피학대(의심) 동물 외 추가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동물에 대해서도 학대 징후 등이 없는지 확인
- 추가 동물로 학대징후가 관찰되거나 학대 받은 걸로 판단되는 경우 피학대(의심) 동물과 마찬가지로 격리 및 보호조치하거나 사육환경 개선 등의 시정명령 시 추가 동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도록 유의

[표 III-8] 학대발생장소 조사 점검표

항목	확인 내용	해당여부		
		Y	N	
사육 환경 및 관리	사육 공간	• 바닥의 재질이 발이 빠지는 망으로 되어 있다.		
		• 사육공간의 가로, 세로가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하이다.		
		• 높이가 동물이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는다.		
		•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다		
		•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가 2m 미만인가?		
	위생 · 건강 관리	•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이 있지만 다른 동물과 격리하지 않는다.		
		•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었다.		
		•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 청소를 안 해 밥그릇, 물그릇, 휴식공간에 분변, 오물 등이 남아 있다.		
		•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아 동물의 행동이 불편하다.		

⑧ 시료채취 및 자료 등의 영치

- 동물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거나 현장조사 중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음
-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때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며(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1항)
- 자료 등을 영치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서식참조)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
- 영치한 자료 등은 검토결과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⑨ 현장조사 기록

- 조사 자료에는 조사를 행한 일시·장소, 작성자의 정보, 진술자의 정보, 동물학대행위(의심)·피해 동물·보호자에 대한 정보, 동물학대(의심)행위자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학대(의심) 동물 및 주변인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

⑩ 동물학대 외의 범죄 의심 시 조치

- 동물학대범죄 외에도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

⑪ 출입·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 현장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동물보호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하거나 위계로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집행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

[표 III-9] 업무수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죄명	범죄내용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수행 중인 동물보호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수행 중인 동물보호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1/2까지 가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동물보호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동물보호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동물학대 행위(의심)자 등 관계인이 동물보호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저항을 방지
 - 다만, 폭행, 협박, 위계 없이 단순히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가능
- 동물보호관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없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더라도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포함

현장조사 거부행위의 예시

- 동물학대(의심)행위자 등 관계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동물학대(의심)행위자 등 관계인이 출입문은 열어주었으나 학대사실을 부인하면서 학대 현장에의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
- 동물학대(의심)행위자 등 관계인이 출입문을 잠그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 동물학대(의심)행위자 등 관계인이 피해동물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5

피학대 동물의 응급처치 및 이송

(1) 응급처치

① 피학대 동물이 숨을 안 쉴 경우

피학대 동물이 숨을 쉬지 않고 누워있다면 동물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옮겨야 하나 옮기기 전 다음과 같이 심폐소생술 시행

- 동물의 오른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도록 눕힘
- 호흡이 없어 동물의 흉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큰소리, 반려견의 귀를 꼬집는 등의 통증 유발 행위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함
- 동물의 잇몸을 손가락으로 꼭 눌렀을 때 잇몸이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본래 색깔로 돌아오는 데 2초 이상 걸리고 동공이 빛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심장이 뛰고 자가호흡이 있는 상태에서는 심폐소생술 실시 금지
-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전에 입안과 후두 부분에 고여있거나 걸려있는 이물질 확인 및 제거

- 출혈이 발생 시 출혈 부위를 깨끗한 천, 붕대, 수건 등으로 압박하여 지혈
- 개와 고양이의 심폐소생술은 구강대 비강법(Mouth to Nose ventilation) 실시. 동물의 입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꼭 잡고 동물의 코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어야 함.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동물의 흉부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 1분에 10회 정도의 주기로 불어넣음
- 심장마사지의 경우 소형견, 고양이에게는 한 손을, 대형견에게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진행해야 함. 해당 동물의 왼쪽 옆구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흉부를 순간적으로 눌렀다가 튕기듯이 손을 떼야 함. 소형견, 고양이의 경우 분당 100회, 대형견의 경우 1초에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권장
- 심장마사지와 구강대 비강법을 조합하여 실시할 경우 1명이 30번의 심장마사지를 행한 후 다른 1명이 2번의 숨 불어넣기를 실시
- 심폐소생술 중간중간 자가호흡이 가능한지, 심장이 다시 뛰는지 자주 확인해줘야 하며 만약 동물의 호흡이 돌아왔다면 심장마사지와 구강대 비강법 중지
- 심폐소생술을 하기에 앞서 동물병원에 연락을 취해 도착시각을 알려줘 응급치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심폐소생술을 동물병원에 가는 중에 실시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

② 과다출혈이 있을 경우

과다출혈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동물은 짧은 시간 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음.

- 피학대 동물이 충격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최대한 동물을 진정시켜야 하며 주변인들이 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자제시켜야 함
- 동물이 흥분해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고정을 권장하며 통증으로 인해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입마개나 넥카라를 씌우도록 함. 단 이때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만약 동맥 손상으로 혈액이 솟구쳐 오른다면 해당 부위를 엄지나 손가락으로 확실하게 눌러서 지혈해야 함
- 깨끗한 천, 수건, 붕대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감싸 출혈이 멈추도록 조치
- 만약 압박으로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상처 바로 윗부분을 고무끈, 신발끈, 스타킹, 넥타이 등으로 꼭 조여냄. 이때 매우 중요한 점은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조이면 안되고 10분 후에 잠시 풀었다가 다시 묶기를 반복.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조이게 되면 그 아래 부위의 조직 괴사가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최후의 조치는 압박으로 도저히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실시해야 함
- 과다출혈 시 동물에게 호흡은 있는지 심장은 뛰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병원으로 운송되는 중에 동물에게 저체온증이 오지 않도록 담요나 옷으로 감싸주어 체온유지에 신경

③ 일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일사병이란 동물의 머리 부분이 과열되어 뇌에 치명적인 손상(뇌막염, 뇌부종, 뇌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임. 한여름에 햇빛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는 일사병의 경우 뇌의 온도가 올라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열사병의 경우 온몸의 온도가 과열되어 영향을 끼치는 것임. 일사병과 열사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예로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늘 없이 짧은 줄에 동물이 묶여있을 경우임.

- 쓰러진 반려견 근처에서 사람들이 흥분하여 큰소리를 내지 않도록 요청함.
- 동물의 몸을 오른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도록 눕히고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며 동물의 혀를 옆으로 살짝 빼고 입을 조금 열어놓음.
- 일사병의 증상으로 체온은 정상이나 맥박이 매우 빠르며 낮고 빠른 숨을 쉬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의식불명 상태로 진행 가능
-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뜨거운 햇살에 놓인 동물을 그늘 아래로 즉각 이동시키는 것임

- 동물이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이때 억지로 물을 먹이면 안 됨(입속으로 물을 부어 넣는 과정에서 물이 폐로 들어갈 수 있음).
- 물에 적신 손수건 또는 타월을 머리 위와 몸에 올려주고 물이 충분히 있을 경우 발바닥을 적시고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다리를 적시도록 함. 갑자기 차가운 물을 동물의 온몸에 끼얹는 일은 없어야 함
- 만약 일시병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심장박동이 멈춘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동물병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이 덥다면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 온도를 낮추도록 함

④ 화상을 입었을 경우

화상은 달궀진 냄비, 끓는 물, 화재, 모닥불, 담배 등에 의한 것이며 증상은 화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나 기본적인 화상의 증상은 피부가 빨갱게 변하고, 물집이 생기며, 피부와 털이 검게 그을리거나 더 나아가 피부손상이 관찰됨. 심각한 화상은 조직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2차 세균감염도 발생하게 됨. 화상을 방지할 경우 상처부위가 악화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동물병원을 찾아야 함. 화상을 입을 경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음.

- 화상을 입은 동물은 극심한 통증에 이성을 잃고 제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입마개, 넥카라 또는 리드줄로 고정하는 것을 권장함
- 피부가 빨갱게 변한 약한 화상에 경우 흐르는 물이 닿도록 하여 피부를 식혀야 함
- 물집이 잡혔을 경우에 물집을 일부러 터트리는 일은 없어야 함
- 피부가 손상되어 열린 상처가 있을 경우 멸균거즈, 거즈, 깨끗한 수건 등으로 상처 위를 덮도록 함
- 동물이 화상을 입은 상처부위를 핏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⑤ 개방 골절의 경우

개방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면서 골절된 뼈의 일부가 피부를 뚫어 곁에서 봤을 때 피부가 열려 있거나 근육이 보이는 경우를 말함.

- 부러진 뼈를 원위치로 놓으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됨
- 개방 골절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입마개나 넥카라를 사용하도록 함
- 골절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동물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
- 열린 상처 부위에 멸균 거즈(멸균 거즈가 없을 시 깨끗한 거즈)를 덮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
- 개방골절 이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기관 손상(예: 방광파열, 폐출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 동물과 차량으로 동물병원 이동 시 골절이 있는 다리에 힘이 가해지거나 무언가에 눌리는 일은 없도록 함

⑥ 감전된 경우

동물이 감전되었을 때 감전의 정도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다르지만 강한 전기에 접촉되었을 경우 심각한 화상뿐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쇼크상태에 달할 수 있음. 감전되었을 때의 증상으로 화상, 오들오들 떠는 모습, 경련, 의식불명, 쇼크상태, 심장정지 등이 있음.

- 감전의 원천과 동물이 여전히 접촉 중이라면 지체없이 동물과 원천을 분리
- 피부가 빨갱게 변하는 화상일 경우 해당 부위에 흐르는 물로 온도 저감
- 심장지가 일어났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함
- 제일 가까운 동물병원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치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⑦ 저체온증일 경우

저체온증은 한겨울에 털이 젖은 상태에서 영하의 온도에 방치되거나 장시간 차가운 물 속에 있을 경우, 날씨가 습하고 추울 때 또는 폭풍우나 강풍이 불 때 장시간 외부에서 방치될 경우, 눈이 내리고 외부에서 오랜 시간 눈을 맞을 때 발생할 수 있음. 저체온증은 순환계 장애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 저체온증의 증상으로 몸이 바들바들 떨림, 숨을 낮게 쉬면서 맥박이 약하게 느껴짐, 코, 귀 끝, 발바닥, 꼬리 끝부분이 매우 차가움, 쇼크 상태로 인한 의식불명 등이 있음. 체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혼수에 빠지고 죽을 수 있음. 코, 귀 끝, 발바닥, 꼬리 끝부분의 신체 부위가 빨갱게, 더 나아가 창백하면서 푸르스름하게 색이 변할 수 있으며 부어오를 수도 있음.

-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동물을 즉시 따뜻한 장소로 옮겨야 함
- 동물의 털이 젖어있다면 세세한 부위까지 수건으로(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 수건과 함께 말리는 것을 권장함) 말려줘야 함
- 따뜻하고 건조한 깔개 위에 눕히고 따뜻한 담요로 동물의 온몸을 덮어줌
- 동상 의심 부위(발, 꼬리, 귀 등)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비비고 마사지
- 너무 뜨겁지 않은 보온병을 수건으로 감싸 담요 밑에 넣어둠
-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제공하는데 이때 억지로 먹이면 안 됨
-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동물을 뜨거운 장판 위에 놓는 것은 피해야 함
- 응급처치를 일부 실행한 이후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

⑧ 눈 부상이 있을 경우

눈에 난 상처는 심각할 경우 실명할 수도 있음. 안구돌출의 경우에는 매우 응급한 상황이며 동물병원을 신속히 방문하는 것이 중요함. 증상으로는 동물이 눈을 계속 깜빡거리며 앞발로 눈을 계속 긁으려고 할 수 있음. 눈이 붓고 눈물이 흐르거나 심지어 출혈이 보이기도 함.

- 이물질이 육안으로 보일 경우 직접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됨(이물질을 잘못 제거할 경우 눈에 더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음)
- 앞발로 눈을 긁지 못하도록 발을 붙잡거나, 발에 붕대를 감거나 넥카라 착용
- 이후 동물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함

(2) 응급처치 동물의 이송

- 부상당한 동물의 이송 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추가 부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송 과정에서 사람이 물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 부상당한 동물을 거칠게 다룰 경우 추가적 내부 출혈, 골절 주변의 연조직 손상 및 기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부드럽게 다룰 것
- 가능하면 동물을 옆으로 눕혀 이동하되, 불편한 기색이 보이거나 숨쉬기 어려워한다면 가슴이나 폐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편안한 위치와 자세를 선택하도록 놓아두는 두는 것을 권장
- 가능한 큰 판자나 합판 조각과 같은 평평한 표면에 해당 동물을 부드럽게 묶거나 테이프로 고정. 의식이 없는 환축이나 허리 부상이 의심되는 환축을 다루면서 그들이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임
- 만약 부상동물이 마비되거나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척추 부상이 의심되며,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단단히 고정해야 함. 단단하고 평평한 지지대(다리판, 합판 조각, 무너진 골판지 상자, 테이블 등을 이용가능)를 구해 목 뒤와 등의 작은 부분에 걸쳐 피부를 잡고 동물을 지지대 위에 부드럽게 밀어 넣음. 등과 목을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부상동물을 지지대에 부드럽게 묶거나 테이프로 고정. 만약 부상동물이 불편해 한다면, 큰 담요 등을 들 것 대신 사용

- 부상동물이 의식이 없는 경우, 머리를 몸과 정상적으로 일직선으로 유지. 비정상적으로 아래로 굽히거나 위로 과도하게 젖혀지면 안됨. 부적절한 구부림이나 스트레칭은 뇌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소시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만약 부상동물이 구토를 했거나 토할 것 같다면, 머리를 심장의 높이 아래로 내려 구토물이 기관지와 폐로 내려가지 않고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할 것. 머리를 심하게 다친 동물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
- 다친 동물을 감싸는 것은 진정 효과가 있으며,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담요는 동물을 부드럽게 들 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운송 도구로도 사용 가능. 동물을 담요의 중앙으로 천천히 밀어 넣고, 담요의 가장자리를 말아 잡기 편하게 만들어 동물을 천천히 들어올려 운반 차량에 탑승. 보통 두 사람이 하는 것을 권장
- 신속한 처치를 위해 이동중 동물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동물에 대한 정보와 부상부위 혹은 증상 등을 설명

6

격리 및 보호조치

(1) 격리 및 보호조치의 의의

- 격리조치란 동물보호관이 동물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동물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하여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피학대 동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
- 격리조치가 피학대 동물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조치라면 보호조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와 치료·보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III-10] 보호조치와 격리조치의 비교

구분	대상	목적
보호조치	- 유실·유기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와 치료·보호
격리조치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학대의 재발방지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한 학대자와의 분리

(2) 격리조치의 대상 및 요건

- 법에서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및 소유자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도록 명시(유실·유기동물을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보호조치 하여야 함)
- 격리조치 등 대상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며, ‘동물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해당 소유자가 보유한 동물’이 아닌에 유의. 현장 상황을 보아 동물학대 혐의점이 높고, 해당 동물의 치료·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격리조치 대상의 범위에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상 보호를 받는 동물이 종과 사육목적의 구분 없이 포함. 다만,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은 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등 학대 적용 법 조항이 상이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 문언 그대로 해석을 하면 피학대 동물 외 동물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학대 상황에 놓여 있는 동물이나 동물학대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추가동물의 경우 격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동물학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아닐 경우 격리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가령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장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80여 마리를 흑서·흑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고 철망 위에 가두어 키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동물보호단체가 해당동물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했으나 지자체에서 거부. 이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포기받는 방식으로 동물 구조
- 판례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폭넓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에 이용하는 동물에 대해서도 제1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어 격리 대상 역시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동물의 놀람을 학대로 인정한 예]

수간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로 개가 크게 놀란(大驚(scare)) 것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현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대구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2662, 3802(병합))

[극도의 스트레스와 위험 노출을 학대로 인정한 예]

여러 마리의 개를 사육·관리하는 자로서 개들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지 않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밀집된 구조의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개를 목줄을 채운 채로 가두어 장기간 사육함으로써 위생 및 건강에 매우 취약한 방식으로 동물을 사육한 점, 좁은 야외공간에 밀집 사육된 개가 사망할 경우 시체 곁에서 방치된 개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사건에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의2호(현 제1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대구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고정46)

[영업이용 동물에 대한 제10조 제4항 제2호(구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2) 적용 사례]

농장에서 개들을 사육, 교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개를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을 하면서 2019. 8.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약 20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적합한 먹이를 먹이지 않고, 사육시설의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하여 2마리의 개에게 욕창, 탈장 등 질병을 유발시키고도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현 제10조 제4항 제2호) 적용(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1752)

(3) 격리조치의 기간 및 절차

① 격리조치 기간

- 동물보호법 제34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5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명시
- 격리조치의 경우 '5일 이상' 외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보호조치의 목적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게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피학대 동물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함

② 격리조치의 집행

- 1)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동물보호관은 현장에서 소유자에게 격리조치 실시 담당자, 근거 법률, 격리조치의 대상과 내용을 구두로 고지

[현장 고지 예시]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귀하 소유의 동물 ○○(축종) ○○마리를 격리조치 합니다.
 격리조치 동물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합니다.
 격리조치 동물은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5일 이상 보호조치됩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며, 귀하께서는 비용징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보호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시는 경우 보호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지나도록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거나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제41조 제2항과 그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의 사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동물보호법 제43조 제3호에 따라 격리조치 된 동물의 소유권이 ○○시로 귀속되니 납부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조치 관련 사항은 격리조치 통보서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며, 통보서 상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2) 격리조치를 집행할 때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조치 대상 동물에 대한 정보(축종, 품종, 모색, 몸무게,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 등록번호, 기타 외관적 특징)와 함께 확인되는 피학대 동물 피해사실(상해 종류, 부위, 크기, 상태 등),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
- 3) 격리 및 보호조치 동물이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 여부 확인
- 4) 격리한 피학대 동물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의학적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격리조치 기간 설정
- 5) 수의학적 진단시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거나 외관상 확인이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검사 중 파악된 정보를 동물병원에 충분히 전달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6) 격리조치 실시 이후에는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통보방법은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도 가능(행정절차법 제24조)

(4) 격리조치 등 직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 동물보호관이 격리조치 등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위계로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형법 제136조 및 제137조).
- 동물학대 행위자 등 직무집행 방해자에게 고지하여 업무수행방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찰은 동물학대 행위자 등 직무집행 방해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폭행·협박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능
- 따라서 격리조치는 가급적 경찰의 동행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행위자 등 직무집행 방해자의 방해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계속될 때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

7

시정명령

(1) 시정명령의 의의

- 시정명령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대행위를 제지하고 비록 현재 동물학대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동물학대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명령 등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54조)

(2) 시정명령의 내용적 범위

-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시정명령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에는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에 해당하는 명령으로 한정
- 예컨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의 경우 ‘동물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과 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위해’의 범위는 넓게 보면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명시된 동물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등으로 해석 가능하며, 좁은 의미로 보자면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금지된 학대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죽음, 상해, 신체적 고통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위해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나 시정명령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적 범위 역시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함이 타당. 따라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호의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은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금지하는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사육방식, 사육환경 등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해석 가능함.

(3) 시정명령 전 의견 청취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야 함

(4)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5호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 동물의 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도의 불이익처분으로, 새로운 불이익 처분(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정명령 처분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 하여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심(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8

격리조치 동물의 반환 및 소유권 취득

(1) 보호비용의 청구 및 납부 등

1) 보호비용의 청구 및 사육계획서 제출 통지

- 동물보호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소유자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도록 명시

보호비용 산출기준 예

1. 산출 계산식 : 1마리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 × 총 보호기간
2.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가. 일반 관리 기준

1) 사료 등 급여

동물명	규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2) 인건비

-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 3)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치료비

- 1)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 2)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비용

- 1)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2)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 3) 사체처리비 :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에 따른다.

- 이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서식 참조)의 비용징수통지서와 함께 사육계획서 제출³⁰⁾을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비용청구는 임의규정인 반면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보호중인 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학대를 받아 구조·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호비용을 산정해 청구해야 함(동물보호법 제42조 제2항)

2) 사육계획서 제출

- 비용징수를 통지받은 소유자가 제34조 제1항 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제4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육계획서를 보호비용의 납부기한 내 보호조치 중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3) 보호비용의 납부

- 비용징수서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함(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2) 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

(3) 소유권의 취득

- 보호조치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42조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동물보호법 제43조 제2호 및 제3호)
- 비용 청구 및 사육계획서 제출 통지서에 보호비용의 납부기한과 미납 또는 사육계획서 미제출 시 소유권 상실에 대해 안내한 경우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보호조치 동물의 소유권 상실과 취득에 대해서 별도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음

30) 동물보호법에 사육계획서의 제출 통지 시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제43조에서 지자체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조건에 대해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명시. 보호비용 청구 통지시 함께 통지하는 것이 합리적

동물학대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1) 고발 및 수사의뢰의 의의

-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피해당사자인 동물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호소하지 못하는 한계로 그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누군가 대신 사건을 고소/고발이 필수. 특히 학대행위자가 소유자등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라면 범죄사실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더욱 어려움
- 동물보호의 책임과 출입·검사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동물보호관은 동물학대범죄의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임
- 따라서 동물보호관은 동물학대범죄를 제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검사 등 현장조사 과정에서 동물학대범죄로 사료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고발 및 수사 의뢰토록 해야 함

(2) 고발 및 수사의뢰 방법

-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 진술로 가능하나, 구두로 고소한 경우 수사 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발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으나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 고발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야 함(고소장, 고발장의 명칭으로 서류가 제출되어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 사건으로 수리되지 않고, '진정'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경찰수사규칙 제21조)
- 수사의뢰는 관계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고발과는 달리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결과적으로 고발과 큰 차이가 없음. 통상 수사의뢰 시 수사의뢰서 양식을 통해 인적사항, 발생일시·장소, 피해상황, 범죄사실, 수사 필요사항(의뢰사유) 등 구체적 사유 기재하여 공문발송



(3) 고발장 작성예시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시장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시 ○○동 ○○번지		
전 화	(휴대폰) ○○○-○○○○○		
이메일	email@korea.kr		
대리인에 의한 고발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연락처 _____)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발대리인 (성명 : 홍길동, 연락처 ○○○-○○○○○)		

※ 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

2. 피고발인

성 명	홍길동 또는 성명불상(이름을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 ○○동 ○○번지		
직 업	○○○	사무실주소	○○시 ○○동 ○○번지
전 화	(휴대폰) ○○○-○○○○○-○○○○○		
이메일	○○○@○○○○.com		
기타사항			

3. 고발취지

(어떠한 범죄로 고발하는지, 죄명 및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 범죄의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

-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년 ○○월 ○○일 ○○:○○경 자신이 운영하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농장에서 ○○를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도살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5. 고발이유

(고발이유에는 피고발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발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 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발인 홍길동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00도 00시 00동 00번지에서 00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 고발인 000은 00시의 동물보호관으로서 00시장의 위임을 받아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중입니다.

나. 동물보호법 위반의 점

- 피고발인은 0000년 00월 00일 00:00경 위의 농장 소재지에서 건강원 등에 판매 할 목적으로 00를 목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증 제1호 사진 참조).
- 또한 해당장소는 다른 00를 사육하는 장소와 불과 3m 남짓으로 인접해 있고, 도살장소와 사육장소 사이에는 어떠한 가림막 등도 없어 사육 장소에서 도살장소가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증 제2호의 각 사진 참조). 때문에 피고발인의 도살행위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피고발인은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00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0회에 걸쳐 00마리를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6. 결론

- 피고발인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으며,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수년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 그러므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우리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조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4) 수사의뢰서 작성예시

○○시군구청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동물학대범죄 수사의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항 제○호를 위반한 동물학대범죄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수사의뢰 합니다.

학대행위자	성명		주민번호	
	직업		주소	
피학대 동물	축종		품종	
	현재 상태			
학대행위	(예시) 2023. ○○. ○○. ○○:○○경 ○○소재 자택 마당에서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막대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회 때리는 등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 접수			
인지경위 (신고접수일시, 접수경로, 발생일시 / 장소 등)				
기타	격리/보호조치 여부 등			

○○시군구청장

협조자
시행
우 ○○○○
전화 번호 ○○○)○○○-○○○○

접수
팩스번호 ○○○)○○○-○○○○

10

시정명령 및 사육계획 이행 여부 점검

(1) 점검의 필요성

- 시정명령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대행위를 제지하고 비록 현재 동물학대범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사육계획서 제출은 이미 발생한 동물학대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가 목적
- 시정명령과 사육계획서 제출은 현재 동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개선 또는 주의가 요구됨을 의미하므로 개선과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확인 필요

(2) 점검방법

- 동물보호법에는 시정명령의 및 제출된 사육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 절차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법에 명시된 역할과 권한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 자료제출

-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받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제34조 제1항 제3호의 동물을 반환 받은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현황 및 사육관리의 개선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 가능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현장조사)

-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도 가능. 실제 동물의 상태와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위해서는 자료 제출보다는 현장조사가 적합
-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출입·검사 목적, 기간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해야 하며, 다른 절차들 역시 출입·검사 절차를 준수

(3) 점검내용

[표 III-11] 사육계획 이행 여부 점검 내용

구분	점검내용	비고
시정명령 이행 여부	• 동물학대(의심)행위의 중단 여부	
	• 동물의 질병 및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치료 여부	
	• 기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이행 여부	
사육계획 이행 여부	• 사육계획서상 장소에서의 사육 여부	
	• 사육계획서에 따른 동물의 사육·관리 방법 이행 여부	
	• 기타 사육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여부	

(4)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1)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보고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이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출입·검사) 진행

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물학대(의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 시정명령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행위가 동물학대범죄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재명령
- 동물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및 보호조치 시행

② 동물의 질병 및 부상당한 동물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조 제5항과 별표2(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
- 다만 해당 동물이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의 질병 및 부상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방치 등으로 인해 질병 및 상해가 유발되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물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및 보호조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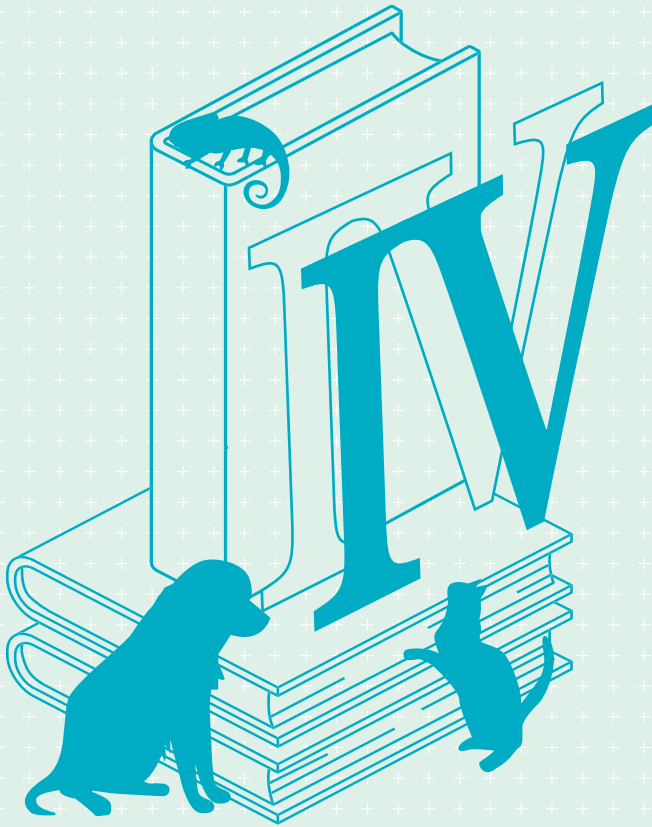
3) 사육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동물보호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음(동물보호법 제41조 제4항)
- 현행 법률에서는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 다만, 점검 결과 동물학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피학대 동물의 격리·보호조치가 가능하며, 동물학대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적절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도 가능

〈 참고 〉 행정기관의 동물학대 대응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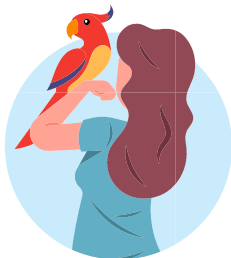
[야생동물카페 영업 이용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사례]

2022. 11. 30 C시는 업주가 개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사육 중인 동물이 병들자 방치해 죽게 만든 야생동물체험카페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2(현 제1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격리하였음. 그러나 업주는 업장에서 격리된 개와 고양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C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① 격리조치로 인해 19마리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이 발생하여 업주가 소유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 ② 보호동물 중 일부 동물의 경우 학대 관련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학대 사유가 해당 개체의 단순 비만에 불과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동물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격리조치의 대상에 업주의 소유가 아닌 동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격리조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함(서울행정법원 2023아10191 집행정지).



부록

1. 동물학대사건 대응 단계별 점검표	74
2. 관련서식	77
3. 참고자료	100



IV 부록

1 동물학대사건 대응 단계별 점검표

대응 단계	확인할 사항	점검/내용																																			
1. 신고접수	1-1.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시 확인 항목 																																			
		- 신고자 인적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30%;">이름</td><td style="width: 70%;">(내용기재)</td></tr> <tr><td>연락처</td><td>(내용기재)</td></tr> <tr><td>주소</td><td>(내용기재)</td></tr> </table>	이름	(내용기재)	연락처	(내용기재)	주소	(내용기재)																												
		이름	(내용기재)																																		
		연락처	(내용기재)																																		
		주소	(내용기재)																																		
		- 신고 경위 확인	(내용기재)																																		
		- 동물학대(의심)행위자 정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30%;">이름</td><td style="width: 70%;"></td></tr> <tr><td>연락처</td><td></td></tr> <tr><td>주소</td><td></td></tr> <tr><td>성별 / 연령</td><td></td></tr> <tr><td>조력자 유무</td><td></td></tr> </table>	이름		연락처		주소		성별 / 연령		조력자 유무																									
		이름																																			
		연락처																																			
		주소																																			
	성별 / 연령																																				
	조력자 유무																																				
	- 동물학대 의심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5%;">시기</td> <td style="width: 15%;">과거발생 (현재발생 없음)</td> <td style="width: 15%;">최초발생</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현재진행</td> <td>최초발생</td> <td></td> </tr> <tr> <td rowspan="4">대상 동물</td> <td>축종 및 품종</td> <td>종료시점</td> <td></td> </tr> <tr> <td>성별</td> <td>빈도</td> <td></td> </tr> <tr> <td>모색 및 외형</td> <td>현재 동물상태</td> <td></td> </tr> <tr> <td>추정 연령</td> <td>현재 보호자/양육장소</td> <td></td> </tr> <tr> <td rowspan="2">학대 의심 내용</td> <td>기타 특징</td> <td></td> <td></td> </tr> <tr> <td>유형(죽임, 상해, 방치 등)</td> <td></td> <td></td> </tr> <tr> <td></td> <td>도구/약품 사용여부와 종류</td> <td></td> <td></td> </tr> <tr> <td></td> <td>심각성 정도</td> <td></td> <td></td> </tr> </table>	시기	과거발생 (현재발생 없음)	최초발생		현재진행	최초발생		대상 동물	축종 및 품종	종료시점		성별	빈도		모색 및 외형	현재 동물상태		추정 연령	현재 보호자/양육장소		학대 의심 내용	기타 특징			유형(죽임, 상해, 방치 등)				도구/약품 사용여부와 종류				심각성 정도		
	시기	과거발생 (현재발생 없음)		최초발생																																	
		현재진행	최초발생																																		
	대상 동물	축종 및 품종	종료시점																																		
		성별	빈도																																		
		모색 및 외형	현재 동물상태																																		
		추정 연령	현재 보호자/양육장소																																		
	학대 의심 내용	기타 특징																																			
유형(죽임, 상해, 방치 등)																																					
	도구/약품 사용여부와 종류																																				
	심각성 정도																																				
- 기타	추가 정보 제공 가능 여부																																				
	현장조사 시 조력여부																																				
	원하는 처리 방법																																				
• 접수 시 유의사항																																					
- 신고 내용을 경청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 신고자를 진정시키고 차분한 대화를 유도했는가?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 신고인의 신분 보장 내용을 안내했는가?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 신분 노출을 원치 않을 경우 인적사항 파악을 최소화했는가?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 신고내용의 동물학대범죄 해당 여부																																					
- 신고내용이 명백히 동물학대범죄에 해당한다.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Y : 경찰신고																																			
- 동물학대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물학대에는 해당한다.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Y : 현장조사선행																																			
- 동물학대범죄 및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Y : 종결																																			
• 동물보호 필요성 및 긴급성 판단																																					
- 동물학대 행위가 진행중이거나 발생한 직후이다.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즉시 현장출동																																			
- 피학대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 추가적인 학대발생 가능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Yes / <input type="checkbox"/> No																																				
1-2. 긴급성 판단																																					

2. 출입·검사	2-1. 현장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증표를 확인했다.(동물보호관증, 출입·검사 통지서 등) • 구조/포획장비를 확인했다.(목줄, 넥카라, 켈넬, 포획장갑, 담요 등) • 의약품 및 응급키트를 챙겼다. • 증거수집 물품을 확인했다.(카메라, 녹취기, 줄자 등)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신고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2-2. 출입·검사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검사 계획을 사전 통지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 • 내용에 목적, 기간/장소,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범위 및 내용이 포함됐다. • 통지시 신고자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 : 착수 시 통지 N : 7일 전 통지	
	2-3. 피학대 (의심) 동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필요 판단 - 동물이 숨을 쉬지 않거나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 - 동물의 과다출혈이 의심되며, 지혈이 되지 않는다. - 동물이 의식을 잃었으며, 외부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어 외부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 - 감전되어 몸을 떨며, 경련, 의식불명, 심정지 증상을 보인다. - 영하의 온도에 장시간 방치되어 숨은 낮게 쉬는 등 저체온 증상을 보인다. - 외력에 의해 안구가 돌출되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동물병원으로 즉시 이송 응급처치 판단에 따른 이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동물의 이송 - 목줄 및 넥카라 등을 채우거나 안전장갑을 착용했다. - 가능한 얇으로 눕히되, 불편해 할 경우 스스로 자세를 선택하게 한다. - 부상동물이 마비되거나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척추 부상 의심) - 부상동물이 의식이 없다. - 부상동물의 이송을 위해 담요를 준비했다. - 이동하는 동물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동물 정보와 상태를 전달한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백보드등에 고정 Y:머리와 몸 일직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조치 대상 동물이 등록대상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징후 판단 - 사체에 상해의 흔적이거나 입 주변 등에 토사물 등이 묻어 있다. - 여러 곳에 회복정도가 다른 여러 상처와 부상이 관찰된다. -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르거나 무기력 하다 - 주인을 두려워 하거나, 주인에게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보인다. - 지나친 식탐이나 배설 자제의 모습을 보인다. - 과도하게 밀집된 생활을 하고 위생관리가 안 된다. - 발톱이 관리가 되지 않아 살을 파고든다. - 신체 특정부위 등을 과도하게 긁거나 탈모 등이 관찰된다. - 항문, 직장 또는 외음부, 질 부위 외상성 손상이 관찰된다. - 꼬리나 생식기 부위를 만졌을 때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 항문, 유도 또는 생식기가 손상되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동물 학대범죄를 의심할 것	
		2-4.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공간의 확인 - 바닥의 재질이 발이 빠지는 망으로 되어있다. - 사육공간이 동물이 몸을 돌리거나 눕기에 충분하지 않다 - 높이가 낮아 동물이 일어서면 머리가 닿는다. -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다. • 위생·건강관리 - 동물에게 질병 및 상해 발생에도 수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격리하지 않는다. -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여 상해가 발생했다. - 동물에게 적절한 음식과 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이 항목에 해당하고 반려동물이므로 인한 질병/상해 발생시 제10조 제4항 제2호 위반 이 항목에 해당하고 반려동물이므로 인한 질병/상해 발생시 제10조 제4항 제2호 위반
		2-5. 추가동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학대(의심) 동물 외에도 학대(의심)행위자가 키우는 동물이 있다. • 추가동물로부터 동물학대 징후가 확인된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 : 격리조치 등 고려

2. 출입·검사	2-4. 현장조사	• 사육공간의 확인		이 항목에 해당하고 반려동물이 이로 인한 질병/상해 발생 시 제 10 조 제4항 제2호 위반
		- 바닥의 재질이 발이 빠지는 망으로 되어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사육공간이 동물이 몸을 돌리거나 눕기에 충분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높이가 낮아 동물이 일어서면 머리가 닿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위생·건강관리		이 항목에 해당하고 반려동물이 이로 인한 질병/상해 발생 시 제 10 조 제4항 제2호 위반
		- 동물에게 질병 및 상해 발생에도 수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격리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여 상해가 발생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2-5. 추가동물 조사		- 동물에게 적절한 음식과 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피학대(의심) 동물 외에도 학대(의심)행위자가 키우는 동물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추가동물로부터 동물학대 징후가 확인된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격리조치등고려
3. 격리/ 보호조치 등	3-1. 격리조치 대상 판단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격리조치 대상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격리조치 대상
		•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켰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격리조치 대상
		• 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상해 등을 입혔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격리조치 대상
	3-2. 격리조치의 집행	• 소유자에게 격리조치 실시 담당자, 근거법률 등을 고지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격리조치 대상 동물에 대한 정보/피해사실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수의사로부터 피학대 동물의 수의학적 진단을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보호기간 결정
		• 격리조치 실시 이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3. 시정명령	• 시정명령의 내용이 동물학대의 중지에 대한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동물학대범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의 내용이 동물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시정명령 가능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명령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졌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N:과태료 부과
4. 반환	4-1. 보호비용 청구 및 사육 계획서 제출 통지	• 보호조치기간이 종료되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소유자가 보호조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일부/전액 면제 가능
		• 소유자에게 비용징수통지서 및 사육계획서 제출을 통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2.사육 계획서 제출	• 소유자가 통지서 수령 7일 이내 / 납부기한 10일 이내 계획서를 제출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4-3, N:소유권 취득
	4-3. 보호비용 납부	• 소유자가 통지서 수령 7일 이내 / 납부기한 10일 이내 비용을 납부했다.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Y:반환, N:소유권 취득

2

관련서식(예시)

현장출입조사서

귀하

주 소:
제 호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원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전화번호
조사의 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동물보호법」제86조 제1항 제2호,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 | e-mail:)

년 월 일

기관명 (인)

행정기관명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동물보호관 출입·검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명칭)	홍길동						
	주소	○○시 ○○동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년 ○○월 ○○일 ○○:○○, ○○시 ○○동 ○○번지에서 동물보호관의 출입·검사를 방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만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101조 제3항 제2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시청	부서명	○○과	담당자	홍길동	
		주소	○○시 ○○동 ○○번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email@korea.kr				팩스번호	○○○-○○○○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영치조서			
영치일자			영치장소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영치목적			
영치물건 (품명·수량)			
근거 법령			
영치물 반환 시기			
그 밖의 안내사항			
<p>「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조사원 ○○○ (서명 또는 날인)</p> <p>소유자(또는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p>			

피학대 동물 격리조치 통지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장소	시설명			
	소재지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격리 사유	
	격리장소		격리기간	
명령대상	동물			
	사람			
참고사항				
근거 법령	<p>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p> <p>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p>			
<p>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의 장</p>				

사육계획서

1. 동물 소유자명: (생년월일:)
 2. 거주지 주소:
 3. 연락처:
 4. 동물정보

동물이름		동물등록번호	
동물종류(품종)		성별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수
동물나이	년 개월 주령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모름
체중(kg)		중성화 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름

5. 사육계획

사육장소	
사육·관리 방법	
그 밖의 사항 (양도 등)	

동물의 소유자인 본인은 「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비용징수통지서			
비용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p>「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로 귀속됩니다. 가.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나.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2. 「동물보호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4.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조사 보고서

I. 신고정보

신고일시	년 월 일 시간(:)	
신고 접수자	부서:	이름:
신고자	가족 <input type="checkbox"/> 신고의무자 <input type="checkbox"/> 주민 <input type="checkbox"/> 익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II. 신고대상

피해동물	축종:	품종:	성별:
	모색:	연령:	체중:
	등록대상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등록번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학대행위자	이름:	성별:	연락처:
	국적: 한국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국가:)		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

III. 발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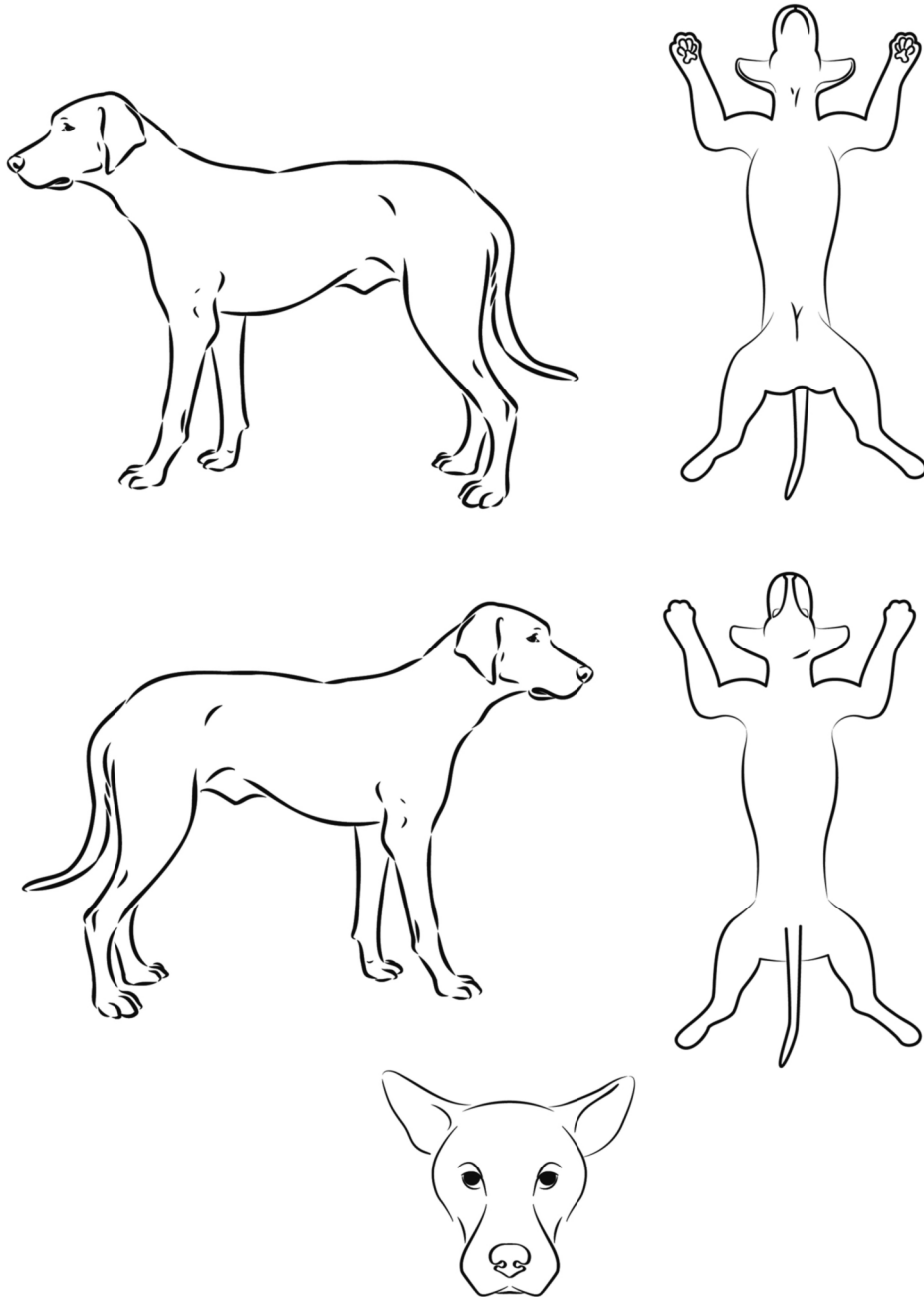
발생일시	년 월 일 시간(:)		
발생장소	가정 내	동물학대 외 아동학대/가정폭력 여부: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확인불가 <input type="checkbox"/>	
	가정 외	기관/시설 <input type="checkbox"/> ()	공공장소 <input type="checkbox"/> (위치)
		기타 <input type="checkbox"/> ()	CCTV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IV. 현장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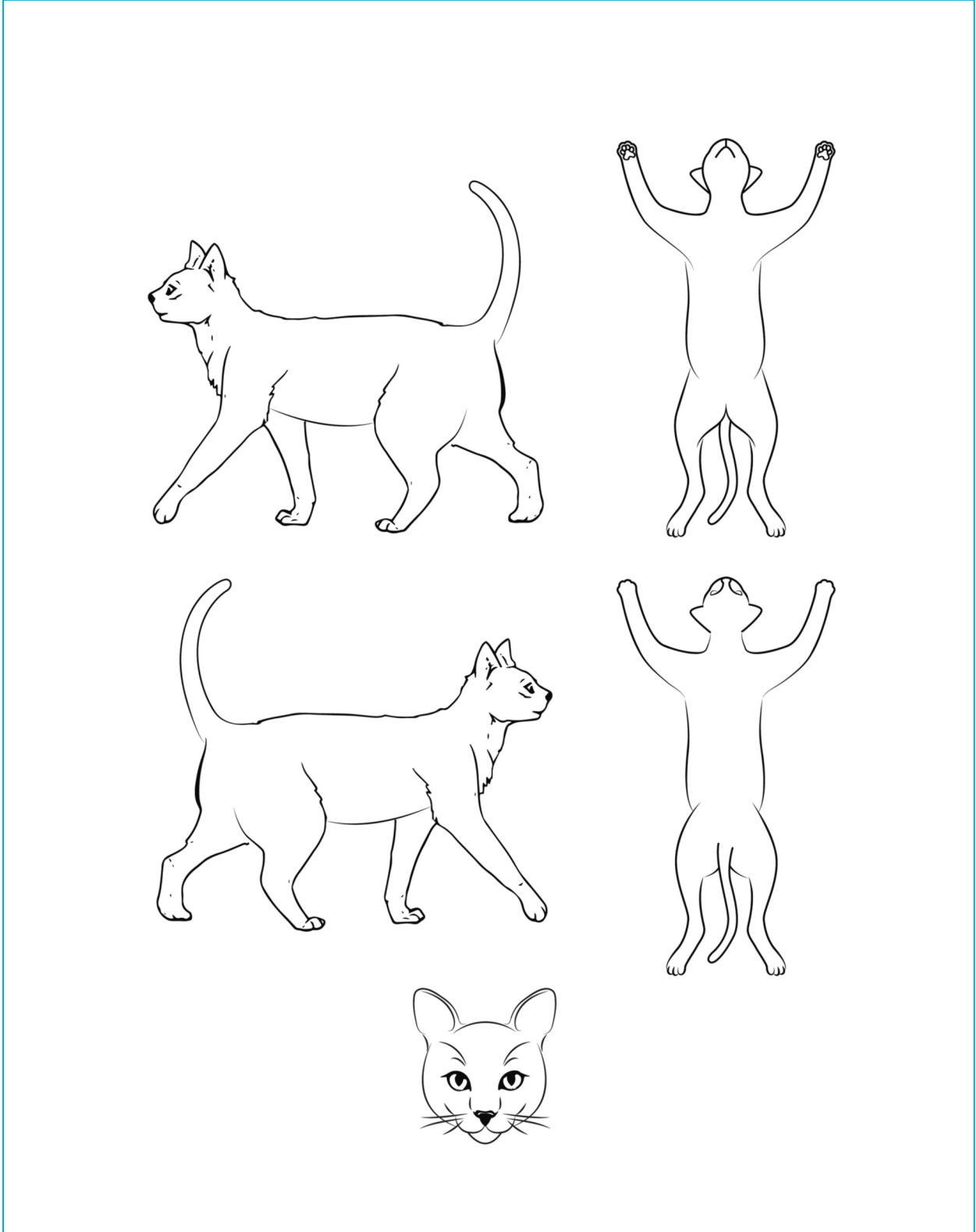
1. 신체적 학대

도구이용	예 <input type="checkbox"/> (종류:)	행위: 때림 <input type="checkbox"/> 찌름 <input type="checkbox"/> 절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학대부위 /상태	①눈 <input type="checkbox"/> ()	②머리 <input type="checkbox"/> ()	
	③코/입 <input type="checkbox"/> ()	④귀 <input type="checkbox"/> ()	
	⑤다리 <input type="checkbox"/> ()	⑥발 <input type="checkbox"/> ()	
	⑦목 <input type="checkbox"/> ()	⑧배 <input type="checkbox"/> ()	
	⑨등 <input type="checkbox"/> ()	⑩꼬리 <input type="checkbox"/>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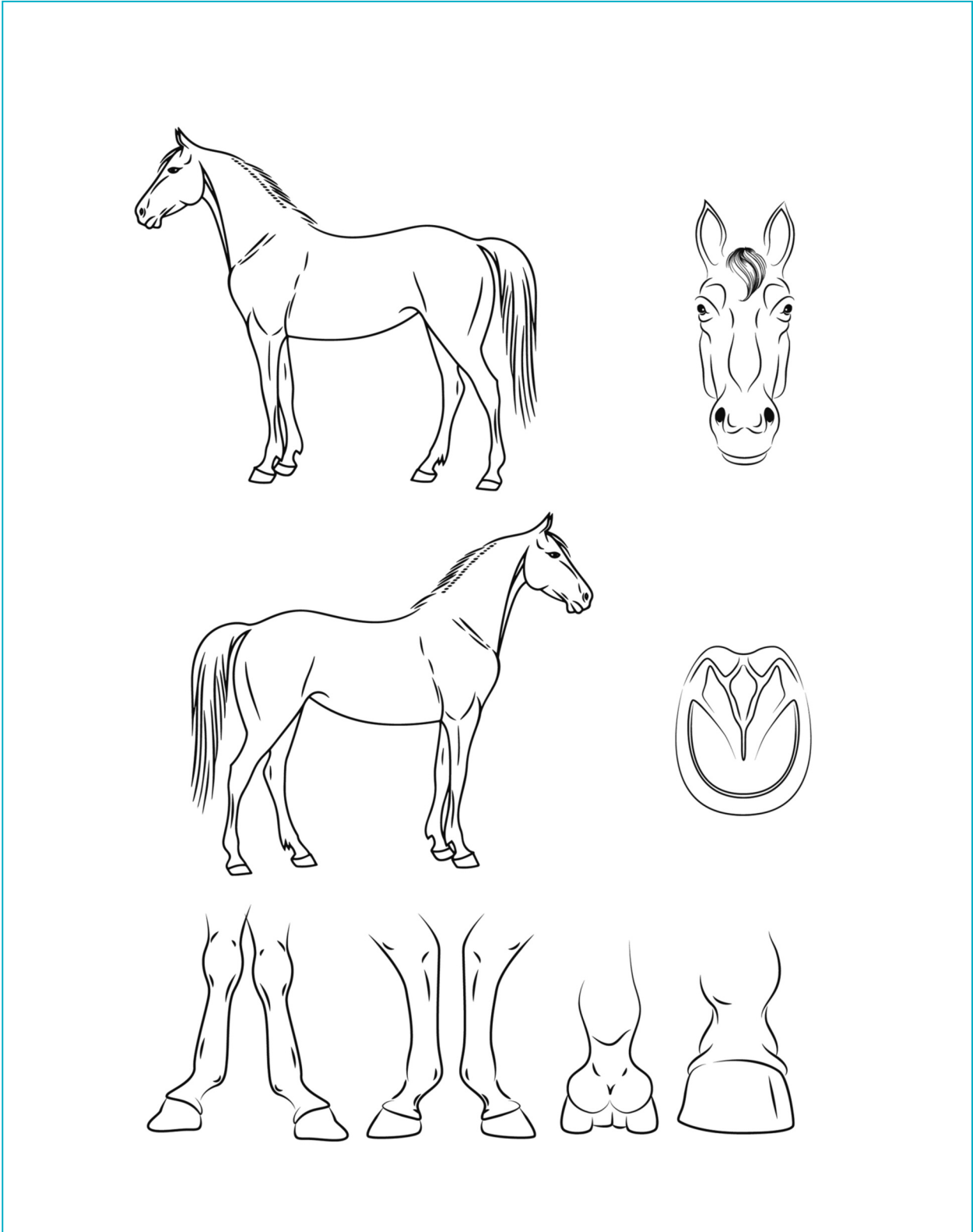
※ 학대부위 및 크기를 도표에 표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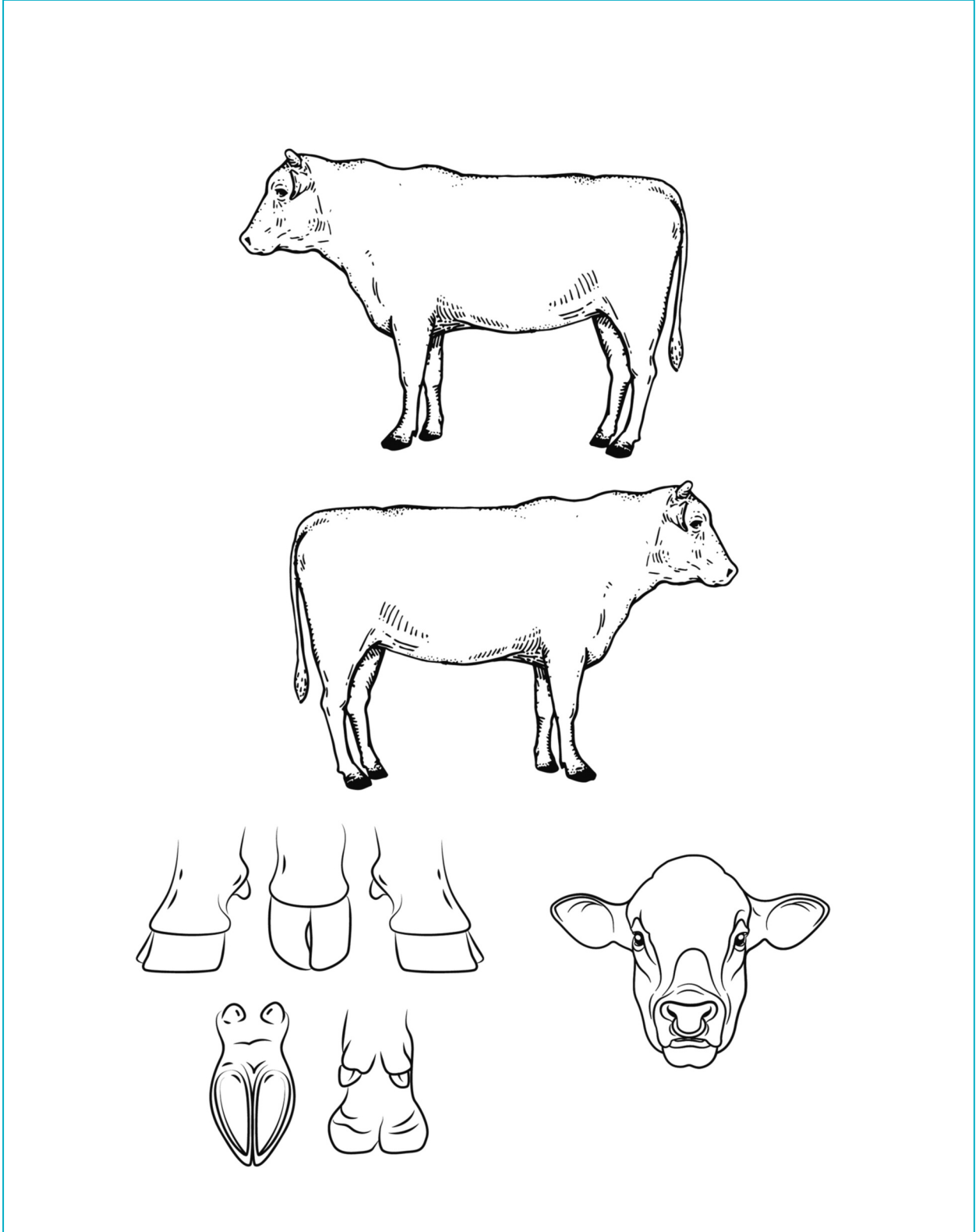
※ 학대부위 및 크기를 도표에 표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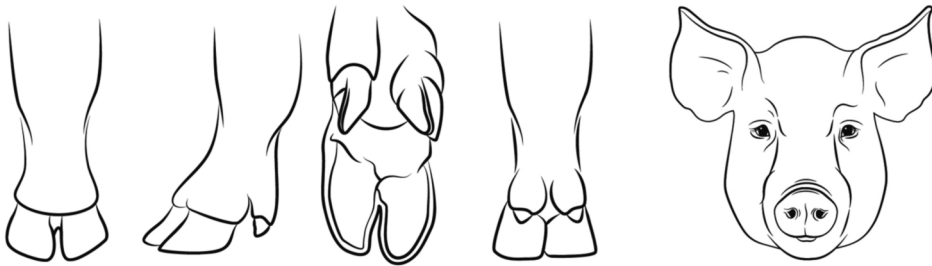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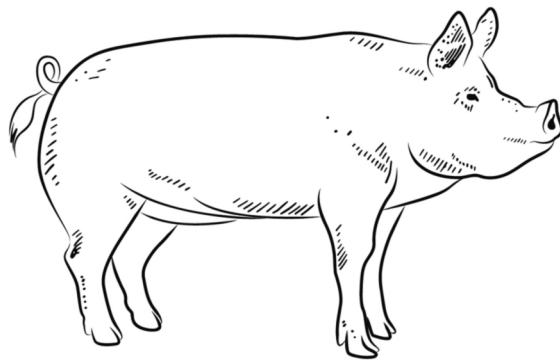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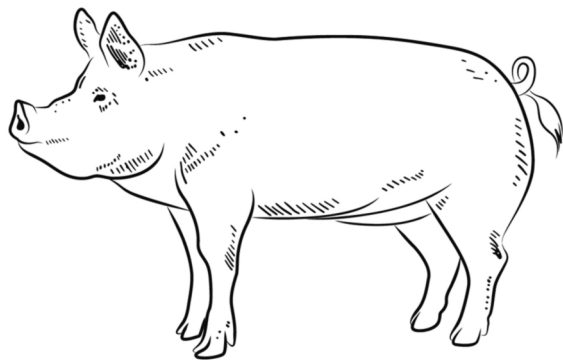
※ 학대부위 및 크기를 도표에 표시 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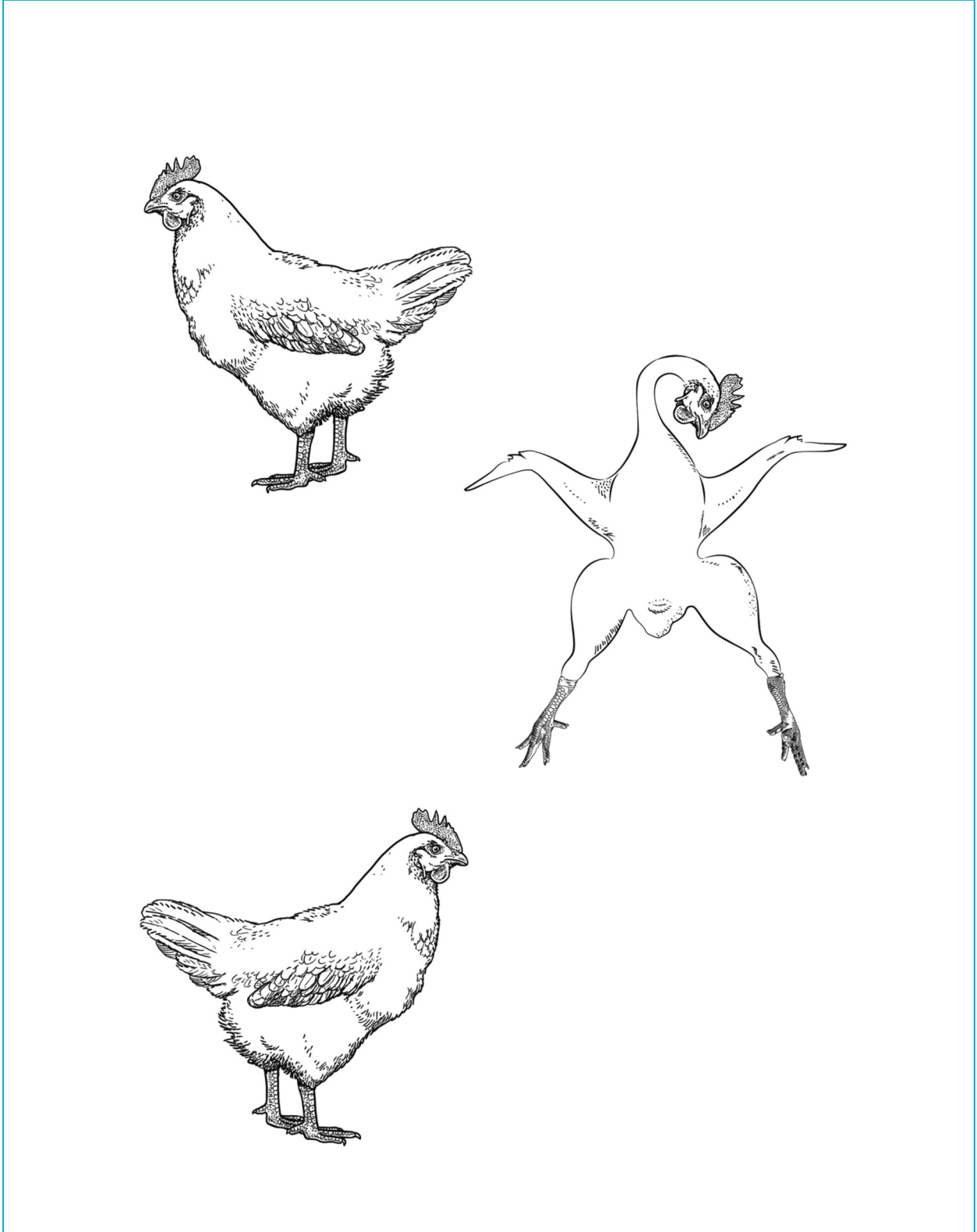
※ 학대부위 및 크기를 도표에 표시 ④



※ 학대부위 및 크기를 도표에 표시 ⑤



※ 학대부위 및 크기를 도표에 표시 ⑥



2. 방입/방치

사육공간	혹서/혹한 노출 <input type="checkbox"/>	좁은 사육공간 <input type="checkbox"/>
	짧은 목줄 <input type="checkbox"/>	뜬장 사육 <input type="checkbox"/>
위생·건강 관리	수의학적 처치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목줄로 인한 상해 발생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물/음식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청소/위생상태 불량 <input type="checkbox"/>
	발톱/털 관리 안됨 <input type="checkbox"/>	
동물의 상태	질병발생 <input type="checkbox"/> 상해발생 <input type="checkbox"/> 영양실조 <input type="checkbox"/> 이상행동 <input type="checkbox"/>	

V. 확인경로

조사자 직접확인 <input type="checkbox"/>	진술 (행위자 <input type="checkbox"/>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주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련자 <input type="checkbox"/>)	CCTV <input type="checkbox"/>
기타		

VI. 판단/조치/결과

판단	오인 또는 허위신고 <input type="checkbox"/> 단순방치 <input type="checkbox"/> 동물학대의심 <input type="checkbox"/>		
조치/결과	계도조치 <input type="checkbox"/> 시정명령 <input type="checkbox"/> 격리/보호조치 <input type="checkbox"/> (일) 경찰신고 <input type="checkbox"/> 고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치·결과 판단사유		
협조요청	경찰 <input type="checkbox"/> ()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시정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동물의 위해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홍길동					
	주소	○○시 ○○동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육중인 동물에 대한 사료 및 물의 미급이						
시정명령의 내용	1. 사육중인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료 및 물의 공급 2. 이행 기간 : ○○○년 ○○월 ○○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보호법 제8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시청	부서명	○○과	담당자	홍길동
		주소	○○시 ○○동 ○○번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email@korea.kr			팩스번호	○○○-○○○○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 - 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접수번호	병성감정의뢰서 (산업동물용)			처리 기간	18일
의뢰인*	성명				
	업체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 번호			
	결과통보 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사육농장 현황*	축주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농장명	주소			
	축종	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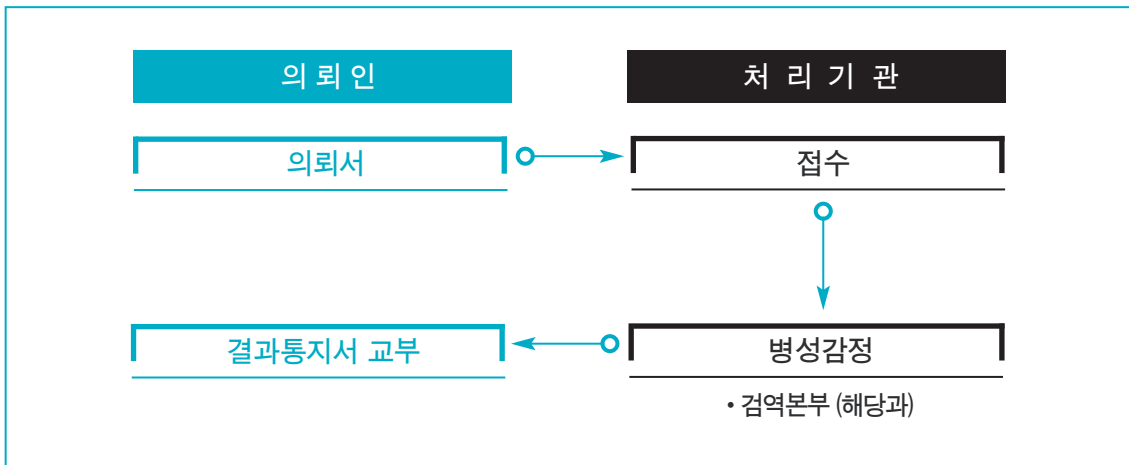
사육단계별 질병발생 상황	구분	성축(계)	비육축(계)	육성축(계)	자축(계)
	사육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발생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발생연령	(연/월)	(일/월)	(일/월)	(일)
	폐사내역	(두/수)	(두/수)	(두/수)	(두/수)
	최초 발생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연월일)
	최초 폐사일				
	축사 동별 폐사율	(폐사두수 / 사육두수)			
임상증상* (주요 증상을 자세히 기재)	<input type="checkbox"/> 소화기계 <input type="checkbox"/> 호흡기계 <input type="checkbox"/> 신경계 <input type="checkbox"/> 급사 <input type="checkbox"/> 유사산 (*아래 유사산 정보 기입 요망) <input type="checkbox"/> 중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유사산 정보	유산 월령	모축 산차수	유산 경력	유산태아 기형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농장내 질병 발생 및 치료내역	백신 접종 내역 (종류, 시기)	
	최근 6개월간 약물 투여 및 치료효과	
	수의사의 최근 진료 (치료) 일시 및 내용	
	최근 6개월간 질병 발생 상황	
	최근 30일간 가축 구입 여부	
사육환경	사육 형태	<input type="checkbox"/> 축사사육 <input type="checkbox"/> 방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최근 사육환경 변화	<input type="checkbox"/> 가축 이동 <input type="checkbox"/> 살충제 등 도포 <input type="checkbox"/> 쥐약 사용 <input type="checkbox"/> 동물사 신축 <input type="checkbox"/> 구축사의 리모델링, 분뇨 제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료의 종류 및 급여상황	<input type="checkbox"/> 농후사료(곡류) <input type="checkbox"/> 조사료(볏짚·목초)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료() <input type="checkbox"/> 최근 사료의 변화 *바뀐 급여 방법 사료 종류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음수 급여상황	<input type="checkbox"/> 지하수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input type="checkbox"/> 최근 음수 변화

가검물 내역*	구분	의뢰두수 (시료수)	연령	성별	체중 (정확하지 않을 경우 어림잡아 기입)	귀표번호	비고
	(예)생축						발병시기 등 기재
	(예)사축						폐사또는 안락사일시, 안락사 방법 등 기재
	(예)부검장기						부검일시, 부검조건, 장기종류 등 자세히 기재
	(예)혈액 또는 분변						시료 성상(색깔, 냄새, 점도 등) 자세히 기재
	(예)사료 또는 음수						

검사 의뢰항목*	1. <input type="checkbox"/> 부검 2. <input type="checkbox"/> 혈액검사 3. <input type="checkbox"/> 혈청화학검사 4. <input type="checkbox"/> 병리조직검사 5. <input type="checkbox"/> 바이러스검사 6. <input type="checkbox"/>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시험 7. <input type="checkbox"/> 분변 내 기생충검사 8. <input type="checkbox"/>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9. <input type="checkbox"/> 유산 관련 질병 검사 10. <input type="checkbox"/> 중독 관련 질병 검사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번은 2번부터 10번을 포함합니다.)	
	기타 요구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수수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수수료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의뢰인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가축의 소유자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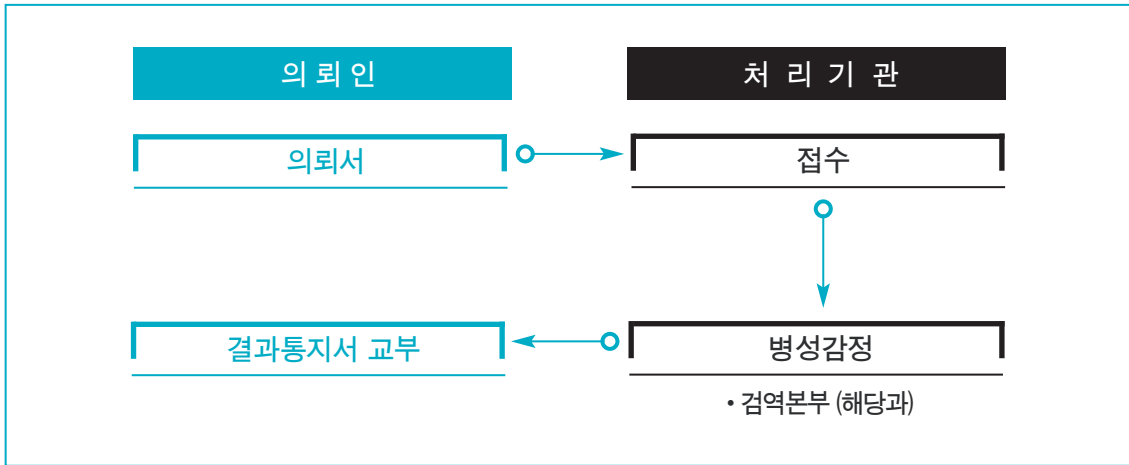
[별지 제1호2서식]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앞쪽)

접수번호	병성감정 의뢰서 (반려동물용)				처리 기간	18일
의뢰인*	성명					
	업체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 번호		
	결과통보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의뢰 동물 정보*	보호자 (발견자) 성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발견장소)					
	축종			품종		
임상 증상* (주요 증상을 자세히 기재)	<input type="checkbox"/> 소화기계 <input type="checkbox"/> 호흡기계 <input type="checkbox"/> 신경계 <input type="checkbox"/> 급사 <input type="checkbox"/> 순환기계 <input type="checkbox"/> 비뇨기계 <input type="checkbox"/> 중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처치 내역	수의사의 진료(치료) 내용 및 약물 투여(처방) 내역					
	백신 접종 내역(종류, 차수)					
사육 형태	<input type="checkbox"/> 집안 사육 <input type="checkbox"/> 집밖 사육 <input type="checkbox"/> 이동장(케이지) 집단 사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검물 내역*	구분	의뢰 두수 (시료 수)	연령	성별 (중성화 유무)	체중 (정확하지 않을 경우 어림잡아 기입)	비고
	예) 사축					폐사 또는 안락사 일시, 안락사 방법 등 기재
	예) 혈액 또는 분변					시료 색상(색깔, 냄새, 점도 등) 자세히 기재
검사 의뢰 항목*	1. <input type="checkbox"/> 부검 2. <input type="checkbox"/> 혈액검사 3. <input type="checkbox"/> 혈청화학검사 4. <input type="checkbox"/> 병리조직검사 5. <input type="checkbox"/> 바이러스검사 6. <input type="checkbox"/> 세균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7. <input type="checkbox"/> 분변 내 기생충검사 8. <input type="checkbox"/> 분변의 전자현미경검사 9. <input type="checkbox"/> 중독 관련 질병 검사 ·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번은 2번부터 9번을 포함합니다.)					
	기타 요청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제1항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수수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수수료

(뒤쪽)



<의뢰인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동물 보호자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질병진단 및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를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의뢰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3년
 -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질병진단 및 검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보호자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의뢰인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얻어 대리 작성 가능

참고자료

i) 영양 상태 평가, 체형 평가 (Body condition score, BCS), Royal Canin

WEIGHT MANAGEMENT PROGRAMME

BODY CONDITION SCORE SMALL DOG

ROYAL CANIN

TOO THIN

1. Risk, lumbar vertebra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discernible body fat.
Obvious loss of muscle mass.

2. Risk, lumbar vertebrae, pelvic bones easily visible.
No palpable fat.
Some bony prominences visible from all directions.
Minimal loss of muscle mass.

3. Risk, easily palpabl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palpable fat.
Top of lumbar vertebrae visible, pelvic bones becoming prominent.
Obvious waist and abdominal tuck.

IDEAL

4. Risk, easily palpable with minimal fat covering.
Waist easily visible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evident.

5. Risk, palpable without excess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behind ribs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up when viewed from side.

6. Risk, palpable with slight excess of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when viewed from above but not prominent.
Abdominal tuck apparent.

OVERWEIGHT

7. Risk, palpable with difficulty, heavy fat cover.
Waist easily visible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may be absent.

8. Risk, not palpable under very heavy fat cover or palpable only with significant pressure.
Waist fat deposits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aist absent.
No abdominal tuck.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may be present.

9. Maximal fat deposits over thorax, spine, and base of tail.
Waist and abdominal tuck absent.
Fat palpable on neck and limbs.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SHAPING UP TO PET OBESITY

BODY CONDITION SCORE GIANT DOG

ROYAL CANIN

TOO THIN

1. Risk, lumbar vertebra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discernible body fat.
Obvious loss of muscle mass.

2. Risk, lumbar vertebrae and pelvic bones easily visible.
No palpable fat.
Some bony prominences visible from all directions.
Minimal loss of muscle mass.

3. Risk, easily palpabl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palpable fat.
Top of lumbar vertebrae visible, pelvic bones becoming prominent.
Obvious waist and abdominal tuck.

IDEAL

4. Risk, easily palpable with minimal fat covering.
Waist easily visible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evident.

5. Risk, palpable without excess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behind ribs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up when viewed from side.

6. Risk, palpable with slight excess of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when viewed from above but not prominent.
Abdominal tuck apparent.

OVERWEIGHT

7. Risk, palpable with difficulty, heavy fat cover.
Waist easily visible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may be absent.

8. Risk, not palpable under very heavy fat cover or palpable only with significant pressure.
Waist fat deposits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aist absent.
No abdominal tuck.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may be present.

9. Maximal fat deposits over thorax, spine, and base of tail.
Waist and abdominal tuck absent.
Fat palpable on neck and limbs.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WEIGHT MANAGEMENT PROGRAMME

BODY CONDITION SCORE MEDIUM DOG

ROYAL CANIN

TOO THIN

1. Risk, lumbar vertebra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discernible body fat.
Obvious loss of muscle mass.

2. Risk, lumbar vertebrae, pelvic bones easily visible.
No palpable fat.
Some bony prominences visible from all directions.
Minimal loss of muscle mass.

3. Risk, easily palpabl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palpable fat.
Top of lumbar vertebrae visible, pelvic bones becoming prominent.
Obvious waist and abdominal tuck.

IDEAL

4. Risk, easily palpable with minimal fat covering.
Waist easily visible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evident.

5. Risk, palpable without excess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behind ribs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up when viewed from side.

6. Risk, palpable with slight excess of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when viewed from above but not prominent.
Abdominal tuck apparent.

OVERWEIGHT

7. Risk, palpable with difficulty, heavy fat cover.
Waist easily visible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may be absent.

8. Risk, not palpable under very heavy fat cover or palpable only with significant pressure.
Waist fat deposits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aist absent.
No abdominal tuck.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may be present.

9. Maximal fat deposits over thorax, spine, and base of tail.
Waist and abdominal tuck absent.
Fat palpable on neck and limbs.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WEIGHT MANAGEMENT PROGRAMME

BODY CONDITION SCORE CAT

ROYAL CANIN

TOO THIN

1. Risk, spine and ribs, thorax easily visible.
Abdominal tuck evident.
Very little muscle.
Loss of muscle mass.
No palpable fat on the rib cage.
Very pronounced abdominal tuck.

2. Risk, easily visible on short/able to see ribs.
Very little muscle.
Loss of muscle mass.
No palpable fat on the rib cage.
Very pronounced abdominal tuck.

3. Risk, visible on short/able to see ribs.
Obvious waist.
Very small amount of abdominal fat.
Marked abdominal tuck.

IDEAL

4. Risk, not visible but can easily be palpated.
Obvious waist.
Small amount of abdominal fat.
Obvious waist.
Very pronounced abdominal tuck.

5. Well proportioned.
Ribs not visible but are easily palpable.
Small amount of abdominal fat.
Obvious waist.
Single abdominal tuck.

6. Risk, not visible but can easily be palpated.
Obvious waist.
Very small amount of abdominal fat.
Very slight abdominal tuck.

OVERWEIGHT

7. Risk, difficult to palpate under the fat.
Waist barely visible.
No abdominal tuck.
Rounding of abdomen with moderate abdominal pad.

8. Risk, not palpable under the fat.
Risk, not visible.
Single abdominal tuck.

9. Risk, not palpable under very heavy fat cover or palpable only with significant pressure.
Waist not clearly defined when seen from above.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SHAPING UP TO PET OBESITY

BODY CONDITION SCORE LARGE DOG

ROYAL CANIN

TOO THIN

1. Risk, lumbar vertebra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discernible body fat.
Obvious loss of muscle mass.

2. Risk, lumbar vertebrae, pelvic bones easily visible.
No palpable fat.
Some bony prominences visible from all directions.
Minimal loss of muscle mass.

3. Risk, easily palpable pelvic bones and all bony prominences evident from all directions.
No palpable fat.
Top of lumbar vertebrae visible, pelvic bones becoming prominent.
Obvious waist and abdominal tuck.

IDEAL

4. Risk, easily palpable with minimal fat covering.
Waist easily visible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evident.

5. Risk, palpable without excess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behind ribs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up when viewed from side.

6. Risk, palpable with slight excess of fat covering.
Waist discernible when viewed from above but not prominent.
Abdominal tuck apparent.

OVERWEIGHT

7. Risk, palpable with difficulty, heavy fat cover.
Waist easily visible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hen viewed from above.
Abdominal tuck may be absent.

8. Risk, not palpable under very heavy fat cover or palpable only with significant pressure.
Waist fat deposits over lumbar area and base of tail.
Waist absent.
No abdominal tuck.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may be present.

9. Maximal fat deposits over thorax, spine, and base of tail.
Waist and abdominal tuck absent.
Fat palpable on neck and limbs.
Obvious abdominal distension.

1단계

- 심하게 마름, 심한 저체중
- 멀리서 봐도 갈비뼈, 척추뼈, 골반뼈 등 몸의 뼈들이 두드러지게 보임.
- 체지방이 없어 보임.
- 몸 전체에 명백하게 근육이 없어 보임.

2단계

- 매우 마름, 심한 저체중
- 갈비뼈, 척추뼈, 골반뼈가 두드러지게 보임.
- 만져지는 지방이 거의 없음.
- 몸 전체에 근육 손실이 관찰됨.

3단계

- 마름, 저체중
- 갈비뼈, 척추뼈, 골반뼈가 육안으로 보이며 쉽게 만져짐.
- 갈비뼈를 만졌을 때 지방이 거의 만져지지 않음.
-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중앙쪽으로 매우 들어가 있음.
- 옆에서 봤을 때 복부 굴곡이 깊어 매우 잘록하게 보임.

4단계

- 이상적인 체중
- 갈비뼈가 육안으로 셀 수 없지만 쉽게 만져지며 촉진으로 갈비뼈를 셀 수 있음.
- 위에서 봤을 때 허리의 굴곡이 보임.
- 옆에서 봤을 때 복부의 굴곡의 뚜렷하게 위쪽을 향하고 있음.

5단계

- 이상적인 체중
- 갈비뼈가 쉽게 만져짐.
- 위에서 봤을 때 허리의 굴곡이 잘 관찰됨.
- 옆에서 봤을 때 복부의 굴곡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위쪽을 향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잘록한 허리를 가짐.

6단계

- 경미한 과체중
- 갈비뼈 아래에 지방이 느껴지만 만졌을 때 갈비뼈를 셀 수 있음.
- 위에서 봤을 때 허리 굴곡이 두드러지지 않음.
- 옆에서 봤을 때 복부의 굴곡이 약간 관찰됨.

7단계

- 비만
- 척추, 꼬리 뿌리 부근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음.
- 갈비뼈 위 지방층이 두꺼워 갈비뼈를 만지기 어려움.
- 힘을 주면서 눌러야 갈비뼈가 만져짐.
- 위에서 봤을 때 허리의 굴곡이 거의 없음.
- 옆에서 봤을 때 복부의 굴곡이 보이지 않음.


8단계

- 매우 비만
- 척추, 꼬리뿌리 부근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음.
- 갈비뼈 위 매우 두꺼운 지방이 있어 강한 압력으로 눌러야 갈비뼈가 만져짐.
- 위에서 봤을 때 허리 굴곡이 없음.
- 옆에서 봤을 때 복부 굴곡이 없거나 아래쪽으로 처져 있음.

9단계

- 심한 비만(고도비만)
- 흉부, 척추, 꼬리 뿌리 부근으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음.
- 다리와 목에 지방이 축적됨.
- 갈비뼈가 강한 압력에도 만져지지 않음.
- 위에서 봤을 때 허리의 굴곡이 바깥쪽으로 나와있음.
- 옆에서 봤을 때 복부가 명백하게 아래로 처져 있음.

ii) 급성 통증의 정도 평가, 반려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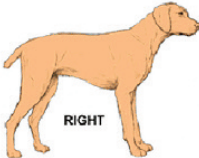
Colorado State University
Colorado State University
Veterinary Medical Center
Canine Acute Pain Scale

Date _____

Time _____

Rescore when awake Animal is sleeping, but can be aroused - Not evaluated for pain
 Animal can't be aroused, check vital signs, assess therapy

Pain Score	Example	Psychological & Behavioral	Response to Palpation	Body Tension
0		<input type="checkbox"/> Comfortable when resting <input type="checkbox"/> Happy, content <input type="checkbox"/> Not bothering wound or surgery site <input type="checkbox"/> Interested in or curious about surroundings	<input type="checkbox"/> Nontender to palpation of wound or surgery site, or to palpation elsewhere	Minimal
1		<input type="checkbox"/> Content to slightly unsettled or restless <input type="checkbox"/> Distracted easily by surroundings	<input type="checkbox"/> Reacts to palpation of wound, surgery site, or other body part by looking around, flinching, or whimpering	Mild
2		<input type="checkbox"/> Looks uncomfortable when resting <input type="checkbox"/> May whimper or cry and may lick or rub wound or surgery site when unattended <input type="checkbox"/> Droopy ears, worried facial expression (arched eye brows, darting eyes) <input type="checkbox"/> Reluctant to respond when beckoned <input type="checkbox"/> Not eager to interact with people or surroundings but will look around to see what is going on	<input type="checkbox"/> Flinches, whimpers cries, or guards/pulls away	Mild to Moderate Reassess analgesic plan
3		<input type="checkbox"/> Unsettled, crying, groaning, biting or chewing wound when unattended <input type="checkbox"/> Guards or protects wound or surgery site by altering weight distribution (i.e., limping, shifting body position) <input type="checkbox"/> May be unwilling to move all or part of body	<input type="checkbox"/> May be subtle (shifting eyes or increased respiratory rate) if dog is too painful to move or is stoic <input type="checkbox"/> May be dramatic, such as a sharp cry, growl, bite or bite threat, and/or pulling away	Moderate Reassess analgesic plan
4		<input type="checkbox"/> Constantly groaning or screaming when unattended <input type="checkbox"/> May bite or chew at wound, but unlikely to move <input type="checkbox"/> Potentially unresponsive to surroundings <input type="checkbox"/> Difficult to distract from pain	<input type="checkbox"/> Cries at non-painful palpation (may be experiencing allodynia, wind-up, or fearful that pain could be made worse) <input type="checkbox"/> May react aggressively to palpation	Moderate to Severe May be rigid to avoid painful movement Reassess analgesic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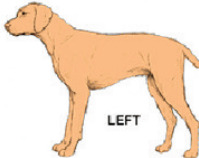


RIGHT

Tender to palpation

Warm

Tense




LEFT

Comments _____

© 2006/PW Hellyer, SR Uhrig, NG Robinson Supported by an Unrestricted Educational Grant from Pfizer Animal Health

통증의 정도 점수	심리&행동의 양상	촉진 시 반응	몸의 긴장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쉴 때 편안해 보임 -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 - 상처나 수술의 부위가 전혀 신경쓰이지 않음 - 주변 상황에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나 수술 부위 또는 몸에 어디를 만지든 신경쓰지 않음 	최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스럽거나 살짝 불안해하고 제대로 쉬지 못함 - 주위 환경에 쉽게 정신이 팔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나 수술 부위 또는 몸의 다른 부위를 만질 때 주변을 보거나, 움찔거리거나, 킁킁거리는 반응을 보임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는 모습에서 불편함이 보임 - 사람이 옆에 없을 때 킁킁거리거나 울거나 상처나 수술부위를 핥거나 비비는 행동을 보임 - 귀가 처져있고,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구부러진 눈썹, 눈에 힘을 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찔거리거나 킁킁거리거리면서 울거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함 	약간에서 중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옆에 없을 때 불안해하며, 킁킁거리거나 끽끽거리고 상처를 물거나 씹는 행동을 보임 - 상처나 수술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의 무게 지탱에 변화를 줌(예: 한 발을 들고 있기, 절룩거리기, 몸의 균형을 한쪽에 쏠린 채 있기) - 몸의 일부 또는 온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증이 너무 심해 미묘한 변화(호흡량 증가로 개구호흡, 눈에 힘을 줌)만 있거나 얼음상태가 될 수 있음 - 날카롭게 울거나, 으르렁 거리거나, 물거나 허공에 입질을 하거나 몸을 뺄려고 하는 등 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음 	중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옆에 없을 때 계속 끽끽거리거나 비명을 지름 - 몸을 움직일려고 하지 않으나 상처를 물거나 씹을려고 함 - 주변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려 함 - 통증에 집중하는 동물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증이 있지 않은 다른 신체를 만질 때에도 킁킁거리거나 우는 소리를 냄 - 만질 때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 	중간에서 심각






iii) 급성 통증의 정도 평가, 반려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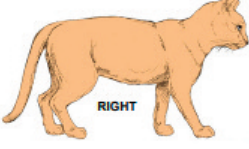


Date _____
Time _____

**Colorado State University
Veterinary Medical Center
Feline Acute Pain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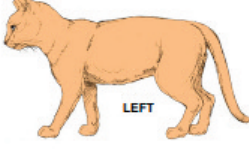
Rescore when awake Animal is sleeping, but can be aroused - Not evaluated for pain
 Animal can't be aroused, check vital signs, assess therapy

Pain Score	Example	Psychological & Behavioral	Response to Palpation	Body Tension
0		<input type="checkbox"/> Content and quiet when unattended <input type="checkbox"/> Comfortable when resting <input type="checkbox"/> Interested in or curious about surroundings	<input type="checkbox"/> Not bothered by palpation of wound or surgery site, or to palpation elsewhere	Minimal
1		<input type="checkbox"/> Signs are often subtle and not easily detected in the hospital setting; more likely to be detected by the owner(s) at home <input type="checkbox"/> Earliest signs at home may be withdrawal from surroundings or change in normal routine <input type="checkbox"/> In the hospital, may be content or slightly unsettled <input type="checkbox"/> Less interested in surroundings but will look around to see what is going on	<input type="checkbox"/> May or may not react to palpation of wound or surgery site	Mid
2		<input type="checkbox"/> Decreased responsiveness, seeks solitude <input type="checkbox"/> Quiet , loss of brightness in eyes <input type="checkbox"/> Lays curled up or sits tucked up (all four feet under body, shoulders hunched, head held slightly lower than shoulders, tail curled tightly around body) with eyes partially or mostly closed <input type="checkbox"/> Hair coat appears rough or fluffed up <input type="checkbox"/> May intensively groom an area that is painful or irritating <input type="checkbox"/> Decreased appetite, not interested in food	<input type="checkbox"/> Responds aggressively or tries to escape if painful area is palpated or approached <input type="checkbox"/> Tolerates attention, may even perk up when petted as long as painful area is avoided	Mild to Moderate Reassess analgesic plan
3		<input type="checkbox"/> Constantly yowling, growling, or hissing when unattended <input type="checkbox"/> May bite or chew at wound, but unlikely to move if left alone	<input type="checkbox"/> Growls or hisses at non-painful palpation (may be experiencing allodynia, wind-up, or fearful that pain could be made worse) <input type="checkbox"/> Reacts aggressively to palpation, adamantly pulls away to avoid any contact	Moderate Reassess analgesic plan
4		<input type="checkbox"/> Prostrate <input type="checkbox"/> Potentially unresponsive to or unaware of surroundings, difficult to distract from pain <input type="checkbox"/> Receptive to care (even aggressive or feral cats will be more tolerant of contact)	<input type="checkbox"/> May not respond to palpation <input type="checkbox"/> May be rigid to avoid painful movement	Moderate to Severe May be rigid to avoid painful movement Reassess analgesic plan




RIGHT

○ Tender to palpation
X Warm
■ Tense



LEFT

Comments _____

© 2006/PW Hellyer, SR Uhrig, NG Robinson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Colorado State University

통증의 정도 점수	심리&행동의 양상	촉진 시 반응	몸의 긴장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쉴 때 편안해 보임 - 사람이 옆에 없을 때에도 만족스러워하고 조용함 - 주변 상황에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나 수술 부위 또는 몸에 어디를 만지든 신경쓰지 않음 	최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서 심리&행동의 변화가 감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가정집)에서 관찰될 수 있음 - 살짝 불안해할 수 있음 - 주변 상황에 덜 관심을 가지나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나 수술부위를 만질 때 반응을 보일 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약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도가 감소하며 혼자 있을려고 함 - 조용하고 눈에 생기가 없음 -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네발을 모두 몸 아래에 둔 채 몸을 낮추고 앉아있음 - 털이 부풀어져 있고 매끈하지 않게 보임 - 통증이 있거나 거슬리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핥을 수 있음 - 식욕이 감소하거나 먹이에 관심을 잃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지거나 부위에 다가갈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도망가려고 함 - 통증이 있는 부위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를 만질 때에 참는 모습이 보임 	약간에서 중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옆에 없을 때 계속 울부짖거나,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하악질을 함 - 상처를 물거나 씹을 수 있으나 혼자 있을 때 거의 안움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증이 없는 부위를 만져도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하악질을 함 - 통증 있는 부위를 만질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어떤 접촉도 원치 않아하며 단호하게 몸을 빼거나 도망가려고 함 	중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엎어져있거나 몸을 잘 가누지 못함 - 주변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려 함 - 통증에 집중하는 동물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어려움 - (사람의 손을 피하고 매우 공격적인 길고 양이의 경우에도) 치료를 받아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음 - 고통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 경직상태일 수 있음 	중간에서 심각

동물보호관 대상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 대상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